거창군 Geochang County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892호 2022. 12. 28.(수)

거창한거창

선결	기관의 장

조 례

거창군 조례 제2744호 거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 3
거창군 조례 제2745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
거창군 조례 제2746호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 ····· 20
거창군 조례 제2747호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 40
거창군 조례 제2748호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44
거창군 조례 제2749호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53
거창군 조례 제2750호 거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64
거창군 조례 제2751호 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70
거창군 조례 제2752호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 75
거창군 조례 제2753호 거창군 화장시설 설치와 조성에 관한 조례 ····· 81
거창군 조례 제2754호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87
거창군 조례 제2755호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 94
거창군 조례 제2756호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 103
거창군 조례 제2757호 거창군 황강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107
거창군 조례 제2758호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11
거창군 조례 제2759호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 114

규 칙

거창군 규칙 제1352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19
거창군 규칙 제1353호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 145
거창군 규칙 제1354호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48

거창군 규칙 제1355호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52
거창군 규칙 제1356호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55
거창군 규칙 제1357호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62
거창군 규칙 제1358호 거창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74
거창군 규칙 제1359호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77
거창군 규칙 제1360호 거창군 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폐지규칙 ····· 183

훈 령

거창군 훈령 제462호 거창군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 185
거창군 훈령 제463호 거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 188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22-147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 190
거창군 고시 제2022-148호 도로명주소 고시 ····· 192
거창군 고시 제2022-149호 도로구간 변경 고시 ····· 193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22-1762호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 195
거창군 공고 제2022-1767호 거창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에 따른 행정예고 · 196
거창군 공고 제2022-1775호 거창군계획시설(시설: 주차장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202

회 람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2년 12월 28일

거창군 조례 제2744호

거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거창군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거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제9조에 따른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전략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변경한 경우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3조(추진계획의 수립·변경) ① 군수는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거창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변경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수립·변경된 추진계획 및 설명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을 마친 경

우 그 점검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정·개정하려는 조례안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를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립·변경하려는 행정계획을 그 수립·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는 이를 검토해야 한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
3. 「건강가정 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
4. 「건축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5.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④ 위원회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의 효율적인 개발·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7조(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군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거창군 지속가능성 평가(이하 "지속가능성평가"라 한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지속가능성평가를 마친 경우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거창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지속가능성평가 결과
3. 군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거창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은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조

례」에 따른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

제10조(위탁)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민관협력단체,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거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의안 번호	2022-117

제출연월일	2022. 11. 24.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내용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2022. 7. 5. 시행)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변경,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임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방법·절차, 위원회 심의생략 가능한 경미한 사유를 정함(안 제2조)

다. 추진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한 경미한 사유를 정함(안 제3조)

라.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 방법, 서면 결과통지를 정함(안 제4조)

마. 조례 제정·개정 시 위원회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5조)

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개발·보급을 위한 실태조사, 조사·연구 의뢰, 홈페이지 게재 등을 정함(안 제6조)

사. 위원회에서 지속가능성 평가 시 고려사항, 자료·의견 요청, 조사·연구 의뢰 등을 정함(안 제7조)

아.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자료·의견 요청, 조사·연구 의뢰 등을 정함(안 제8조)

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능 대행을 정함(안 제9조)

차. 위탁근거 마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제5항, 제9조제4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5항·제8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20조제4항

2)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10. 24.~11. 1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2년 12월 28일

거창군 조례 제2745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 전략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 중 “행정복지국, 경제산업국”을 “행정국, 경제복지국, 안전건설국”으로 한다.

제5조와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행정과,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직·인사 운영, 직원 복무·후생복지, 대외협력, 정보전산 등 행정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청년정책, 교육진흥, 청소년 보호육성, 도서관 관리·운영 등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
3. 일반민원행정, 자동차등록, 지적민원, 새주소사업, 식품·공중위생, 지적재조사 등 민원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부과, 경리·계약, 세입관리, 공유재산관리, 개별 주택·공시지가 등 재무에 관한 사항

제6조(경제복지국) ① 경제복지국에 경제기업과,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를 둔다.

② 경제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시장·경제, 기업승강기 산업 지원, 투자유치, 공동체일자리, 에너지 정책 등 경제기업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축제, 관광정책, 문화재보존, 박물관·수승대 등 문화관광에 관한 사항
3. 복지정책 종합계획 수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아동·보육 등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안전건설국) ① 안전건설국에 안전총괄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를 둔다.

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재난안전관리정책, 재난대응총괄, 자연재난, 안전점검, 중대재해예방, 민방위, 통신· CCTV 관제 등 안전에 관한 사항
2. 산림조성, 산림소득, 화강석 육성, 산림보호, 공원·녹지 조성관리, 산림레포츠, 힐링랜드 운영 등 산림에 관한 사항
3. 환경정책, 환경보존, 폐기물 관리, 수질·토양 개선, 자연환경보전, 야생동물 보호, 창포원 운영 등 환경에 관한 사항
4. 건설행정, 농업기반조성, 하천, 도로, 교통정책·교통지도, 운수 등 건설교통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 도시개발, 스마트도시, 건축 사업·행정, 건축 허가·신고 등 도시건축에 관한 사항

제9조4호 중 “방역”을 “방역, 동물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학

교급식”을 “외식산업, 학교급식”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② 거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미래전략과장, 건설과장”을 “경제기업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③ 거창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경제교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

④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경제교통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⑤ 거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경제교통과장,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⑥ 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경제교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

⑦ 거창군 농어업인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경제교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

⑧ 거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⑨ 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⑩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⑪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담당관 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군수 소속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둔다.	**제3조(담당관 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군수 소속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전략담당관**을 둔다.
제4조(국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 경제산업국**을 둔다.	**제4조(국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국, 경제복지국, 안전건설국**을 둔다.
제5조(행정복지국) ① 행정복지국에 행정과, 미래전략과,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를 둔다.	**제5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행정과,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를 둔다.
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②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직·인사 운영, 직원 복무·후생복지, 대외협력, 정보전산 등 행정에 관한 사항	1. 조직·인사 운영, 직원 복무·후생복지, 대외협력, 정보전산 등 행정에 관한 사항
2. 군 현안·역점 사항 추진, 기업지원, 승강기산업 육성, 투자유치 등 미래전략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청년정책, 교육진흥, 청소년 보호육성, 도서관 관리·운영 등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 청년정책, 교육진흥, 청소년 보호육성, 도서관 관리·운영 등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	3. 일반민원행정, 자동차등록, 지적민원, 새주소사업, 식품·공중위생, 지적재조사 등 민원에 관한 사항
4. 민원행정, 지적민원, 새주소사업, 식품·공중위생, 지적재조사 등 민원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부과, 경리·계약, 세입관리, 공유재산관리, 개별 주택·공시지가 등 재무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부과, 경리·계약, 세입관리, 공유재산관리, 개별 주택·공시지가 등 재무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축제, 관광정책, 문화재보존, 박물관·수승대 등 문화관광에 관한 사항	
7. 복지정책 종합계획 수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8.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아동·	

현 행	개 정 안
보육 등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경제산업국) ① 경제산업국에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를 둔다. 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시장·경제,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 에너지정책, 교통행정·운수 등 경제교통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관리정책, 재난대응총괄, 재해복구, 안전점검, 민방위, 통신·CCTV 관제 등 안전에 관한 사항 3. 산림사업, 화강석 육성, 산림보호, 공원·녹지 조성관리, 항노화, 산림레포츠, 힐링랜드 운영 등 산림에 관한 사항 4. 환경정책, 환경보존, 폐기물 관리, 수질·토양 개선, 자연환경보전, 야생동물 보호, 창포원 운영 등 환경에 관한 사항 5. 건설행정, 농업기반조성, 하천, 도로 등 건설에 관한 사항 6.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재생, 건축 사업·행정, 건축 허가·신고 등 도시건축에 관한 사항	**제6조(경제복지국)** ① 경제복지국에 경제기업과,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를 둔다. ② 경제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시장·경제, 기업승강기 산업 지원, 투자유치, 공동체일자리, 에너지 정책 등 경제기업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축제, 관광정책, 문화재보존, 박물관·수승대 등 문화관광에 관한 사항 3. 복지정책 종합계획 수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아동·보육 등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제6조의2(안전건설국)** ① 안전건설국에 안전총괄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를 둔다. 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재난안전관리정책, 재난대응총괄, 자연재난, 안전점검, 중대재해예방, 민방위, 통신· CCTV 관제 등 안전에 관한 사항 2. 산림조성, 산림소득, 화강석 육성, 산림보호, 공원·녹지 조성관리, 산림레포츠, 힐링랜드 운영 등 산림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3. 환경정책, 환경보존, 폐기물 관리, 수질·토양 개선, 자연환경보전, 야생동물 보호, 창포원 운영 등 환경에 관한 사항 4. 건설행정, 농업기반조성, 하천, 도로, 교통정책·교통지도, 운수 등 건설교통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 도시개발, 스마트도시, 건축 사업·행정, 건축 허가·신고 등 도시건축에 관한 사항
제9조(소관사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농업정책, 농지 보존·이용에 관한 사항 2. 농촌지도사업, 농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산행정, 축산기술 지도·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가축질병, 방역 등에 관한 사항 5. 농업 기계화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 등에 관한 사항 6. 식량작물, 농작물 재해 등에 관한 사항 7. 원예, 특용작물 등의 생산·재배·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8. 과수재배 신기술 보급, 과수 시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9. 친환경 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10. 기술 벤처농업, 특화작물에 관한 기술개발·지도에 관한 사항 11. 농촌진흥, 마을만들기에 관한 사항 1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항 13. 농산물 수출과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14.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사항 15. 귀농, 귀촌에 관한 사항 16. 학교급식, 로컬푸드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농업·농촌 발전, 시험연구, 농촌진흥에 관한 사항	제9조(소관사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농업정책, 농지 보존·이용에 관한 사항 2. 농촌지도사업, 농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산행정, 축산기술 지도·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가축질병, 방역, 동물복지 등에 관한 사항 5. 농업 기계화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 등에 관한 사항 6. 식량작물, 농작물 재해 등에 관한 사항 7. 원예, 특용작물 등의 생산·재배·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8. 과수재배 신기술 보급, 과수 시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9. 친환경 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10. 기술 벤처농업, 특화작물에 관한 기술개발·지도에 관한 사항 11. 농촌진흥, 마을만들기에 관한 사항 1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항 13. 농산물 수출과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14.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사항 15. 귀농, 귀촌에 관한 사항 16. 외식산업, 학교급식, 로컬푸드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농업·농촌 발전, 시험연구, 농촌진흥에 관한 사항

[별표 4]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7조 관련)

기관별 /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소계	농 업 기술센터	보건소			
총 계		793	360 ~~358~~	17	149	76 ~~75~~	73 ~~74~~	41	42 ~~43~~	184 ~~185~~
정무직		1	1							
일반직	소계	756	354 ~~352~~	17	119	46 ~~45~~	73 ~~74~~	40	42 ~~43~~	184 ~~185~~
	4급	5 ~~4~~	4 ~~3~~		1		1			
	4~5급	0 ~~1~~							0 ~~1~~	
	5급	39 ~~38~~	15	3	6	4	2	3	1 ~~0~~	11
	6급 이하	712 ~~713~~	335 ~~334~~	14	112	42 ~~41~~	70 ~~71~~	37	41 ~~42~~	173 ~~174~~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1	1							
연구직 (연구사)		7	3		3	3		1		
지도직 (지도사)		28	1		27	27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2-118

제출연월일	2022. 11. 24.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민선8기 공약사항 실천과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과 미래 성장 50년을 위한 관광, 신산업 발굴 등 미래성장산업 추진 동력확보를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국, 1담당관 신설

1) 행정복지국, 경제산업국 ⇒ 행정국, 경제복지국, **안전건설국**

2) 기획예산담당관 ⇒ 기획예산담당관, **전략담당관**

나. 1과 폐지: 미래전략과

다. 국 신설에 따른 과 조정

국	과
행정국(4)	행정과,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
경제복지국(4)	경제기업과,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안전건설국(5)	안전총괄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라. 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 총 정원 변동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30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11. 7.~11. 22.

나) 예고결과: 의견 1건(반영)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검토의견	처리결과(통보내용)
경제교통과장	교통담당을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로 사무분장 건의	도로정책·시설 업무와 연계 및 경제교통과 업무 과중 해소를 위해 안전건설국 건설과로 이관하는 것이 적절	반영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2년 12월 28일

거창군 조례 제2746호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로 정하도록 한”을 “위임된”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말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군수”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9조 조 제목 “(청구인서명부의 제출)”을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중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생년월일”을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청구인서명부”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하고 제14조·제15조를 제13조·제14조로 하고 제13조·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거창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관계 공무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5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의장의 직무 등) ①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제1항 중 “위원장”을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개의”를 “개의(開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위원장이 따로”를 “의장이”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간사 및 회의록)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한다.
제20조제3항 중 “법 제10조제3항 및 이 조례 제6조제1항”을 “제6조제1항 ”으로 한다.

제21조 중 “법 제26조제1항”을 “법 제26조제1항·제4항·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의 책무) ①군수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삭 제>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말한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	<삭 제>

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2.「지방자치법」제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려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분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덧붙여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덧붙여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④ (생 략)	②~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군수는 주민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주민투표와 관련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삭 제>**
제14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제13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거창군 주민투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군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군의 5급 이상 공무원 2. 군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관계 공무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의 경우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삭 제>**
③ 제2항의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신 설>	**제15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의장의 직무 등)** ①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생 략)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생 략) 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8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간사 및 회의록)**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한다.
제20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② (생 략) ③ **법 제10조제3항 및 이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⑥ (생 략)	**제20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6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⑥ (현행과 같음)
제21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1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제4항·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table>
<tr><td colspan="5">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td></tr>
<tr><td rowspan="2">청구인
대표자</td><td>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3">(전화번호:)</td></tr>
<tr><td>청구의 대상
및 취지</td><td colspan="4"></td></tr>
<tr><td>청구 이유</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주민투표
실시구역 변경</td><td colspan="4">[ ]신청 [ ]필요없음</td></tr>
<tr><td>변경 사유</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5">「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td></tr>
<tr><td colspan="5">※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td></tr>
</table>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수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별지 제3호서식]

<table>
<tr><td colspan="6">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td></tr>
<tr><td>주민투표
청구요지</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청구인대표자</td><td>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주소</td><td colspan="4">(전화번호:)</td></tr>
<tr><td rowspan="6">수임자</td><td>성명</td><td colspan="2">(서명 또는 날인)</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4">(전화번호:)</td></tr>
<tr><td>기간</td><td colspan="4">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td></tr>
<tr><td>성명</td><td colspan="2">(서명 또는 날인)</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4">(전화번호:)</td></tr>
<tr><td>기간</td><td colspan="4">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td></tr>
<tr><td colspan="6">「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td></tr>
<tr><td colspan="6">※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td></tr>
</table>

[별지 제4호서식]

<table>
<tr><td colspan="5">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td></tr>
<tr><td>주민투표
청구요지</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청구인대표자</td><td>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3">(전화번호:)</td></tr>
<tr><td rowspan="6">수임자</td><td>성명</td><td>(서명 또는 날인)</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3">(전화번호:)</td></tr>
<tr><td>기간</td><td colspan="3">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td></tr>
<tr><td>성명</td><td>(서명 또는 날인)</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3">(전화번호:)</td></tr>
<tr><td>기간</td><td colspan="3">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td></tr>
<tr><td colspan="5">「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수 (인)</td></tr>
<tr><td colspan="5">※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td></tr>
</table>

[별지 제5호서식]

( ) 주민투표의 청구

청구인 서명부

서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명

읍·면(○책 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읍·면(○책중 ○권) 란에는 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리·반으로 작성한다.**

청구인 서명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6호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

1. 첨부서류: 관련자료
2. 작성요령
   가.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나.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다.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table>
<tr><td colspan="5">이의신청서</td></tr>
<tr><td rowspan="2">신 청 인</td><td>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3">(전화번호:)</td></tr>
<tr><td>대 상</td><td colspan="4"></td></tr>
<tr><td>신 청 취 지</td><td colspan="4"></td></tr>
<tr><td>신 청 사 유</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5">「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td></tr>
<tr><td colspan="5">1. 첨부서류 : 증명자료
2. 작성요령
가.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나.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다.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td></tr>
</table>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2-119

제출연월일	2022. 11. 24.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주민투표법」 개정(2022. 4. 26.)으로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 조정, 전자청구서명제도 도입,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신설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투표제도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재기재,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위임근거 삭제에 따른 정비(안 제2조~제4조, 제8조·제9조, 제13조)

1) 법령 재기재 및 개정사항 미반영 사항 삭제

(가) 군의 책무: 「주민투표법」 제2조~제4조 재기재

(나)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19세: 「주민투표법」제5조 개정으로 18세로 하향 조정

(다) 거소: 「주민투표법」제5조 개정으로 재외국민 거소 삭제

(라)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주민투표법」제12조의2 재기재

2) 위임근거 삭제에 따라 삭제

(가) 주민투표의 대상: 조례에 위임하였던 것을 「주민투표법」 제7조에 직접 규정

나. 전자청구인서명부 신설(안 제8조제1항, 제10조)

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운영 등 정비(안 제13조~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민투표법」 제5조·제9조·제10조·제12조·제12조의2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11. 4.~11. 23.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2년 12월 28일

거창군 조례 제2747호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2(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매 회계연도마다”를 “회계연도마다”로 “계상”을 “반영”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미래전략과장”을 “기금업무 담담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업지원담당주사”를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 중 “중소기업업무 관련 담담주사”를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의2(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제2조의2(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 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그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미래전략과장 2. 기금출납원: 기업지원담당주사 ③ (생 략)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 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그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주사 ③ (현행과 같음)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간사는 중소기업업무 관련 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관내 중소기업 금융기관 이자지원

나. 관련 조문: 제8조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연도(2023년)	2차연도(2024년)	3차연도(2025년)	4차연도(2026년)	5차연도(2027년)
총 비용(a - b)		5,675	5,126	4,586	4,046	3,506
수입	예치금	5,942	5,675	5,126	4,586	4,046
	이자수입	49	51	60	60	60
	소계(a)	5,991	5,726	5,186	4,646	4,106
지출	사업	316	600	600	600	600
	소계(b)	316	600	600	600	600

3. 관련 의견: 사업자금 융자 이자를 보전함으로써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군내 중소기업 육성기여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중소기업 금융기관 이자지원: 600백만원

작성자: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2-120

제출연월일	2022. 11. 24.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거창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2015년에 설치되어 운용 중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지역의 중소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2)

1) 현행: 2022년 12월 31일

2) 변경: 2027년 12월 31일

나. 용어를 순화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

나.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 기금 5,942백만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10. 31.~11. 2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2년 12월 28일

거창군 조례 제2748호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0조의2와 제10조의3,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인구교육·문화관광·복지정책 및 경제 업무부서의 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다만 청년이 위촉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다.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라.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의2(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의2(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2조(종전 제11조)제1항 중 “개의”를 “개의(開議)”로 한다.

제12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1조(종전 제12조)제1항 중 “제척”을 “제척(除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6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5항(종전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청년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청년수당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군수는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 청년에게 예산 범위에서 거창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적극적인 군정 참여
2. 소셜미디어 활용한 군정홍보 활동
3.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 추진과 지역공동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활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조의2 및 제20조의2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인구교육과장, 문화관광과장, 복지정책과장,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청년이 위촉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으로 구성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거창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인구교육·문화관광·복지정책 및 경제 업무부서의 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다만 청년이 위촉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다.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라.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남용한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제10조의2(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 설>	**제11조의2(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④ (생 략)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①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해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①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6조의2(생활안정 지원사업) ① 군수는 청년 부부의 결혼 초기 생활 안정을 위하여 결혼축하금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 노동자의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일정 기간 후 약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디딤돌통장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전세 자금의 대출 이자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의2(생활안정 지원사업) ① 군수는 청년 부부의 결혼 초기 생활 안정을 위하여 결혼축하금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 노동자의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일정 기간 후 약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디딤돌통장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전세 자금의 대출 이자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청년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청년수당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의2(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군수는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 청년에게 예산 범위에서 거창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적극적인 군정 참여 2. 소셜미디어 활용한 군정홍보 활동 3.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 추진과 지역공동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활동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1) 청년수당

2)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나. 관련조문: 제16조의2, 제20조의2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연도(2023년)	2차연도(2024년)	3차연도(2025년)	4차연도(2026년)	5차연도(2027년)	합계
합계		203	203	203	203	203	1,015
세출	청년수당	200	200	200	200	200	1,000
	지역공동체 강화 청년활동 지원	3	3	3	3	3	15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청년수당

가. 매년 100가구

나. 1명당 200만원 지원

2.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가. 매년 15명

나. 1명당 20만원

작성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2-121

제출연월일	2022. 11. 24.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에 농업 분야 위원을 추가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한 청년수당 지원과 청년이 지닌 역량으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군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여 그들이 거창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 시 당연직 위원 추가함(안 제10조제3항)

1) 농업기술센터소장

나. 위원회 입안 기준에 따라 조문 순서 및 내용 등 정비(안 제10조의2·제10조의3, 제11조·제11조의2·제12조)

다. 청년수당을 신설함(안 제16조의2)

라.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신설함(안 제20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 203백만원 확보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11. 3.~11. 23.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2년 12월 28일

거창군 조례 제2749호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거창군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서관법」 제3조에 따른다.

제4조제2항제1호·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본문 중 “다음 각 호와 같

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자료대출) 군수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도서관 외로 대출할 수 있다.

제7조 조 제목 및 본문 중 “망실”을 “분실”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부속시설 이용) ① 다목적실과 시청각실(이하 “부속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부속시설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독서문화행사 등 도서관 설치·운영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될 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3. 공공 또는 공익상의 행사 등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부속시설 이용시간 등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 조 제목, 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을 “이용”으로 각각 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하면 조 제목 및 본문(기존 제1항) 중 “사용자”를 “이용자”로 한다.

제15조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도서관운영위원회) ①「도서관법」제34조에 따른 거창군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도서관업무 부서의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교육계 및 문화계 전문인사

나. 그 밖에 교육 및 문화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이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거창군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자료의 수집·보존·열람·대출 및 부속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한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2. “열람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3. “관외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4. “부속시설”이란 도서관 내 ‘다목적실’과 ‘시청각실’을 말한다. 5. “사용료”란 부속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수수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정보의 복사 및 인쇄를 하기 위하여 시설 또는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서관법」 제3조에 따른다.
제4조(열람 및 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입관료 및 자료의 열람·대출은 무료로	제4조(열람 및 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입관료 및 자료의 열람·대출은 무료로

한다. ② 도서관의 열람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자료실 : 09:00 ~ 18:00(다만, 토·일요일은 09:00 ~ 17:00) 2. 자유열람실 : 09:00 ~ 22:00(다만, 휴관일은 09:00 ~ 18:00)	한다. ② 도서관의 열람 및 이용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삭 제>
제6조(자료대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다. 1.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도서관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군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군 소재 직장에 재직 중 이면서 도서관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3.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1. 희귀 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논문집 3.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5. 비디오테이프, 컴팩트디스크, 카세트, 영상물 등 비도서자료 6. 그 밖에 군수가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6조(자료대출)** 군수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도서관 외로 대출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망실·훼손에 대한 책임) 대출 열람인이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분실·훼손에 대한 책임)** 대출 열람인이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 ① 부속시설을 사	**제10조(부속시설 이용)** ① 다목적실과

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시청각실(이하 “부속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부속시설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독서문화행사 등 도서관 설치·운영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될 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3. 공공 또는 공익상의 행사 등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부속시설 이용시간 등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사용시간)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부속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 사용일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일은 도서관 개관일로 한다. 2. 사용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삭 제>
제12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시설 사용 및 도서관 자료복사·자료출력의 경우 별표와 같이 사용료 및 수수료를 부과 징수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시간 중 그 부속시설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2. 공공 또는 공익상의 행사로서 군수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삭 제>

행사 ④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개시 2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속시설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부속시설의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도서관 시설의 안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때 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제13조(이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속시설의 이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경우 2.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이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부속시설의 이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도서관 시설의 안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때 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제14조(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도서관의 시설,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설비를 훼손 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이용자 책임)** 이용자는 사용기간 중 도서관의 시설,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삭 제>
제15조(입관의 제한) 군수는 전염병환자, 음주자, 그 밖에 도서관 내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입관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입관의 제한)** 군수는 감염병환자, 음주자, 그 밖에 도서관 내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입관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도서관운영위원회) ①「도서관법」제30조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	**제16조(도서관운영위원회)** ①「도서관법」제34조에 따른 거창군 도서관운

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구교육과장 2. 교육계 및 문화계 전문인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도서관 운영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도서관업무 부서의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교육계 및 문화계 전문인사 나. 그 밖에 교육 및 문화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실비변상)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

	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2-122

제출연월일	2022. 11. 24.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임기를 변경하고 사용료 및 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공도서관으로써의 기능을 다하여 거창군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임조례와 자치조례를 함께 규정함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위임함(안 제4조·제6조·제10조)

1) 열람 및 이용시간, 도서관 외 자료대출, 부속시설 이용기준

다. 부속시설 사용료, 수수료 폐지(안 제12조·별표)

라. 도서관운영위원회 정비(안 제16조~제19조)

1) 임기변경: 1년 ⇒ 2년

2) 신설: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마. 그 밖에 용어순화 등(안 제7조·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서관법」 제34조·제48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11. 4.~11. 23.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2년 12월 28일

거창군 조례 제2750호

거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8호(종전 제9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모든 관급공사에 적용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대금지급의 전자적처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도급·하도급 계약대금의 청구·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해야 한다.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2. 공사기간이 30일 초과인 공사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을 말한다. 2.~6. (생 략) 7. “건설기계 임대료”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하는 건설기계 임대차 등의 경비를 말한다. 8. “체불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과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계를 사용한 후 미지급된 임대료를 말한다. 9. “공사감독자등”란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를 말한다. 10·11. (생 략) 12.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란 군이 도급을 받은 자에게 공사나 용역 대금 지급 시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간으로 지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을 말한다. 2.~6. (현행과 같음) <삭 제> 7. “체불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과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계를 사용한 후 미지급된 임대료를 말한다. 8. “공사감독자등”란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를 말한다. 9·10. (현행 제10호·제11호와 같음) <삭 제>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모든 관급공사에 적용한다.

현행	개정안
한다)가 체불임금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① 군수는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보완 및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은 5천만원 이상인 모든 관급공사에 대하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2. 그 밖에 각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군수가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각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금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 군의 예산·재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제6조(대금지급의 전자적처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도급·하도급 계약대금의 청구·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해야 한다.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2. 공사기간이 30일 초과인 공사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거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2-123

제출연월일	2022. 11. 24.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급공사의 의무적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과 관련된 요건을 정비하여 법적합성을 확보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함(안 제2조)

1) 건설기술용역업자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나. 적용범위 확대함(안 제3조)

다. 법령 범위에서 관급공사의 의무적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요건 정비함(안 제6조)

1)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2) (현행)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인 관급공사

⇒ (변경)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초과인 관급공사일 것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10. 28.~11. 18.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2년 12월 28일

거창군 조례 제2751호

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5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5조에 따른”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6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6조에 따라”로 ““거창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거창군 재향군인회”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재향군인회원”을 “재향군인회 회원”으로 한다.

제4조(재정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 범위에서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조 제목 “(지원대상사업)”을 “(지원대상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제4조”로 “지원”을 “재정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기념하는 사업”을 “기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회원”을 “재향군인회 회원”으로 “향군”을 “재향군인”으로 “교육사업”을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교육사업”을 “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순례사업”을 “순례”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거창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거창군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예우) 재향군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어려운 재향군인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예우)** 재향군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어려운 재향군인회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재정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 범위에서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 사업 3. 군민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정신	**제5조(지원대상 사업)** 제4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재정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 2. 재향군인회 회원의 안보의식 및 재향군인 업무 교육 3. 군민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정신

현 행	개 정 안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 제5조의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신청방법과 교부절차, 실적보고,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함양 교육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 제>

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2-124

제출연월일	2022. 11. 24.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으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여 거창군 재향군인회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호국정신 함양 및 고취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근거 신설(제4조)

1) 법령 근거

(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

(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나. 용어 순화 및 문장 정비함(안 제2조·제3조·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 18,000천원 확보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10. 28.~11. 1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의견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2년 12월 28일

거창군 조례 제2752호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질병,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거창군민에게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권리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합돌봄”이란 노령·장애·질병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역사회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춰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및 일상생활 유지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통합돌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과적인 통합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체계적인 통합돌봄 지원을 위해 거창군 통합돌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통합돌봄 대상 발굴 및 지원방안
3. 분야별 추진 내용 및 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운용
5. 통합돌봄에 대한 교육·홍보·연구·평가
6. 그 밖에 군수가 통합돌봄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부서, 기관,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 등 협조·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통합돌봄 사업 등) ① 군수는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실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2.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3. 건강한 재가생활을 위한 요양·돌봄 및 일상생활 유지
4. 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복귀
5. 통합돌봄 관련 조사 및 연구
6. 그 밖에 통합돌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합돌봄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통합돌봄 대상) 통합돌봄 대상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그 밖에 신체적·정신적 질환 등의 사유로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군민의 이해 증진과 참여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1. 주민 및 단체의 참여를 위한 홍보
2.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3. 주민참여 교육·연구 또는 연수 등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통합돌봄회의) 군수와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는 읍·면장은 통합돌봄 대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협의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통합돌봄회의를 개최한다.
1. 통합돌봄 대상의 욕구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와 조정을 통한 고난도 사례 서비스지원
2. 통합돌봄자원(통합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력·시설·장비·용역 등을 말한다) 개발과 통합돌봄 사업 지원
3. 통합돌봄 정책과제 개발
② 통합돌봄회의는 통합돌봄 담당 공무원, 관련 전문가, 통합돌봄 대상 및 통합돌봄 제공기관 종사자 등이 참석한다. 이 경우 통합돌봄회의 참석 대상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돌봄회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통합돌봄 심의·자문) 군수는 통합돌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자문한다.
1.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2.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및 연계 지원
3. 통합돌봄 사업의 역할 분담 및 조정
4. 그 밖에 통합돌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통합돌봄센터) ① 군수는 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과 민·관 협력기반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돌봄 대상과 상담
2. 통합돌봄 대상의 지속적인 지역 거주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통합돌봄 지원
3. 통합돌봄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
4. 그 밖에 군수가 통합돌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제10조 각 호의 사항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관련조문: 제6조, 제9조 및 제11조

나. 발생요인

1) 통합돌봄에 관한 사업(주거환경, 보건•의료, 일상생활 유지, 관련 조사 및 연구 등)

2) 통합돌봄회의 관련 참석자 수당

3) 통합돌봄센터 설치·운영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세출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합계
계	240,000	385,000	470,000	440,000	440,000	1,977,022
군비	119,000	264,000	349,000	319,000	319,000	1,370,000
도비보조 (2022년 기준 매칭비율 5:5)	121,000	121,000	121,000	121,000	121,000	607,022

3. 관련 의견: 지역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 보장증진에 기여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 소요액		240,000	385,000	470,000	440,000	440,000
공간 개선비		30,000	60,000	30,000	-	-
돌봄인력 인건비		130,000	200,000	270,000	270,000	270,000
운영비(사무관리비)		30,000	50,000	70,000	70,000	70,000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주거분야	20,000	30,000	40,000	40,000	40,000
	보건의료분야	20,000	30,000	40,000	40,000	40,000
	돌봄분야	10,000	15,000	20,000	20,000	20,000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신 동 범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의안 번호	2022-125

제출연월일	2022. 11. 24.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군민이면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역 주도형 통합돌봄 제공기반을 구축하여 삶의 질 향상과 예방적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장기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안 제1조~제3조)
나. 군수의 책무, 실행계획의 수립을 정함(안 제4조·제5조)
다. 통합돌봄 사업 및 지원, 업무의 위탁을 정함(안 제6조)
라. 통합돌봄 대상, 교육 및 홍보를 정함(안 제7조·제8조)
마. 통합돌봄회의, 통합돌봄 심의·자문을 정함(안 제9조·제10조)
바. 통합돌봄센터 설치·기능, 위탁근거를 정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2023년 예산 119,800천원 확보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10. 28.~11. 1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화장시설 설치와 조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2년 12월 28일

거창군 조례 제2753호

거창군 화장시설 설치와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화장시설의 설치와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공공복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설치 및 위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 화장시설(이하 "화장시설"이라 한다)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4조(화장시설의 부대시설) 화장시설에는 화장로 시설과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1. 시신안치실 및 분향실
2. 유족대기실 및 편의실
3. 관리사무실
4. 주차장

5.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
6. 장례용품 또는 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시설

제5조(부지선정) 군수는 최적의 화장시설 설치를 위하여 설치부지를 공개 모집할 수 있다.

제6조(화장시설 설치추진위원회) ① 화장시설의 설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거창군 화장시설 설치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장시설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등
2. 화장시설 설치지역의 범위
3. 화장시설 설치지역의 지원 범위 및 내용
4. 화장시설 설치부지의 심사 및 선정
5. 그 밖에 화장시설 설치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화장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 안전건설국장, 행복나눔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나. 장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군민, 사회단체 대표자 등
라. 그 밖에 군수가 화장시설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서면 심의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보낸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사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②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①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경비지원) 군수는 화장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 의견수렴 및 부지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관련 단체나 주민 등에게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선진지 견학
2. 그 밖에 적극적인 군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화장시설 설치와 조성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화장시설 설치

나. 관련조문: 제3조 설치 및 위치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합계
국비		1,900	2,006	3,906
도비		400	437	837
군비	100	7,500	7,657	15,257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2023년도 화장시설 타당성 용역비: 100백만원

2. 2024년도 이후

가. 화장시설 설치

1) 총비용: 20,000백만원

2) 국비 확보 계획

나. 주민지원사업비는 기금조성 계획

작성자 행복나눔과장 이 호 현

거창군 화장시설 설치와 조성에 관한 조례

의안 번호	2022-126

제출연월일	2022. 11. 24.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거창군 화장시설 설치와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최적의 화장시설 부지 선정 등 군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조례 입안 원칙에 맞게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정의를 정함(안 제2조)

다. 화장시설 설치 및 위치, 부대시설을 정함(안 제3조·제4조)

라. 부지선정 시 공개모집으로 할 수 있음을 정함(안 제5조)

마. 화장시설 설치위원회 기능·운영 등을 정함(안 제6조~제14조)

바.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필요한 경비지원을 정함(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2)「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제138조

나.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 100백만원 확보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10. 31.~11. 21.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2년 12월 28일

거창군 조례 제2754호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등) ① 군수는 힐링랜드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에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약제외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약제외 시설물의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운영기준, 관리자 권한 예약의 내부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주차장,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3조의3(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등) ① 군수는 힐링랜드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에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약제외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약제외 시설물의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운영기준, 관리자 권한 예약의 내부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입장료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7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3.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등 시설사용자 6. 그 밖에 군수가 힐링랜드에 공익목적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설사용료 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등, 공익목적: 시설사용료 및	제5조(입장료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7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3.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등 시설사용자 6. 그 밖에 군수가 힐링랜드에 공익목적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설사용료 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등, 공익목적: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2. 영 제9조의7제2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휴양관 또는 숲속의집 사용자, 공무수행자: 주차장 사용료 ③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체험료 2. 영 제9조의7제2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휴양관 또는 숲속의집 사용자, 공무수행자: 주차장 사용료 ③ 주차장,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별표 2〕 **시설사용료(제4조제1항 관련)**

<table>
<tr><th rowspan="2">시설명</th><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사용 기준</th><th colspan="2">사용료</th><th rowspan="2">추가 징수 기준</th></tr>
<tr><th>성수기</th><th>비수기</th></tr>
<tr><td rowspan="6">1. 주차장</td><td rowspan="2">가. 경차
나. 1,000시시 미만</td><td>30분</td><td colspan="2">250원</td><td>10분 초과당 100원</td></tr>
<tr><td>1일</td><td colspan="2">2,500원</td><td></td></tr>
<tr><td rowspan="2">가. 승용차, 승차인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나. 1톤 이하 화물차</td><td>30분</td><td colspan="2">500원</td><td>10분 초과당 200원</td></tr>
<tr><td>1일</td><td colspan="2">5,000원</td><td></td></tr>
<tr><td rowspan="2">가. 승차인원 16인승 이상 승합차
나. 1톤 초과 화물차</td><td>30분</td><td colspan="2">1,000원</td><td>10분 초과당 400원</td></tr>
<tr><td>1일</td><td colspan="2">10,000원</td><td></td></tr>
<tr><td rowspan="3">2. 산림 휴양관</td><td>36제곱미터 (2명~4명)</td><td rowspan="3">1일</td><td>100,000원</td><td>70,000원</td><td rowspan="5">-최대수용 인원 초과 1명당 1만원

-추가 가능인원 1실당 2명

-별표 3에 따른 감경률 적용 제외</td></tr>
<tr><td>52제곱미터 (6명~8명)</td><td>140,000원</td><td>90,000원</td></tr>
<tr><td>80제곱미터(10명)</td><td>180,000원</td><td>150,000원</td></tr>
<tr><td rowspan="2">3. 숲속의 집</td><td>38제곱미터(2명~4명)</td><td rowspan="2">1일</td><td>100,000원</td><td>70,000원</td></tr>
<tr><td>52제곱미터(6명~8명)</td><td>140,000원</td><td>90,000원</td></tr>
<tr><td>4. 셔틀버스</td><td colspan="4">힐링랜드 시설사용자: 무료</td><td></td></tr>
</table>

비고: 1회 주차 시 누적시간으로 산정한 금액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경우 1일 주차요금으로 징수한다.

[별표 3] 시설사용료 감경 기준(제5조제3항 관련)

1. 주차장<신 설>

감경대상	감경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 표지를 붙인 차량	50퍼센트

2.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

감경대상	감경률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퍼센트	1. 비수기 주중에 한정함 2. 1가정 1실에 한정함 3. 감면대상자가 직접 예약한 경우에 한정하며, 입실한 그날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1급~3급인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퍼센트	
4급~7급인 국가보훈대상자		
거창군민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30퍼센트	

비고

1. “국가보훈대상자”란 영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2항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2. “거창군민”이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함
3.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이란 조례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말함
4. 감경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하나만 적용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2-127

제출연월일	2022. 11. 24.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힐링랜드 시설사용료의 기준과 감경기준을 추가하고,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힐링랜드 방문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힐링랜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근거 신설(안 제3조의3)

나. 주차장 사용료 및 감경기준 신설(안 제5조제3항, 별표 2, 별표 3)

1) 사용료 신설: 경차, 1,000시시 차량

가) 30분 기준 250원(10분 초과당 100원 추가)

나) 1일 2,500원

2) 50퍼센트 감경: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등 표지를 붙인 차량

다.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의 사용료 추가징수 기준 신설(안 별표 2)

1) 최대수용 인원 초과 1명당 1만원

2) 추가 가능 인원 1실당 2명

3) 별표 3에 따른 감면율 적용 제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11. 3.~11. 23.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2년 12월 28일

거창군 조례 제2755호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①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범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해야 한다.

③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군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국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3조(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군수는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4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① 군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
3.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
4. 연도별 목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의 수립·시행
7. 「거창군 환경기본조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탄소중립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및 과장

2. 교통, 에너지, 산림, 건축 또는 물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과장
3.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4.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온실가스 감축 지원) ①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사업자 또는 군민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 투자
2. 군민 대상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 유도
3. 그 밖에 군수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14조(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탄소중립 관련 조사, 연구 및 환경개선 기술의 개발
2.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외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및 환경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
3. 탄소중립 관련 정책 추진과정에의 군민 참여
4. 그 밖에 군수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탄소중립 등을 위한 생산·소비문화의 확산) ① 군수는 재화의 생산·소비·운반 및 폐기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한 군민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거창사랑상품권 등을 활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16조(탄소중립에 대한 교육·홍보 등) ① 군수는 군민에게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녹색성장을 위해 교육 및 홍보 사업을 한다. 이 경우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환경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거창군 환경위원회를(이하 "환경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환경위원회의 기능은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거창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② 환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환경계획의 수립
2. 지역환경기준의 설정
3. 지역환경 영향평가
4.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
5. 「거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환경보전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대책으로 본다.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

나. 관련조문: 안 제3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가) 5년마다 수립

(나) 용역비: 100,000천원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국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70,000
군비		30,000

국비:군비=70:30

작성자 환경과 환경과장 신종호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의안 번호	2022-128

제출연월일	2022. 11. 24.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추진 체계 구축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음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을 정함(안 제2조)

다.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을 정함(안 제3조)

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등을 정함(안 제4조~제12조)

1) 기능, 구성, 임기,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회의 등

2) 거창군 환경위원회의 기능을 대행(안 부칙 제2조)

마.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정함(안 제13조)

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사업 및 지원을 정함(안 제14조)

사. 탄소중립 등을 위한 생산·소비문화의 확산을 정함(안 제15조)

아.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정함(안 제16조)

자.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폐지(안 부칙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2) 「지방자치법」 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 1억원 확보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10. 27.~11. 1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2년 12월 28일

거창군 조례 제2756호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개정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6]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기준(제24조제1항 관련)

1. 수거식 화장실

부과기준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계
10리터	**185원** ~~174원~~	15원	**200원** ~~189원~~

2. 개인하수처리시설

구 분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계
기본요금 (750리터까지)	**20,080원** ~~17,100원~~	1,125원	**21,205원** ~~18,225원~~
초과요금 (100리터마다)	**1,350원** ~~1,150원~~	150원	**1,500원** ~~1,300원~~

비고

1. “수집·운반” 이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포함
2. “처리” 란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입처리를 말함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2-129

제출연월일	2022. 11. 24.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확충사업으로 인한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로 분뇨 수거물량 감소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경영악화가 심화된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현실화율에 가깝게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안 별표 6)

1) 수거식 화장실

가) 10리터 기준 174원 ⇒ 185원

나) 11원 인상, 인상률 6.3퍼센트

2) 개인하수처리시설

가) 기본요금

(1) 750리터까지: 17,100원 ⇒ 20,080원

(2) 2,980원 인상, 인상률 17.4퍼센트

나) 초과요금

(1) 100리터마다: 1,150원 ⇒ 1,350원

(2) 200원 인상, 인상률 17.4퍼센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 제41조제4항, 제47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협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10. 20.~11. 9.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황강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2년 12월 28일

거창군 조례 제2757호

거창군 황강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사업의 일환인 황강취수장 설치 추진과 관련하여 범군민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거창군 황강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황강취수장 관련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거창군 황강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리적 지원 대책 마련
2.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토론회, 공청회와 대정부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결의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추진
3. 황강취수장 설치 및 물 통합 관리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추진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2명의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거창군의회 의원
2.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3. 그 밖에 위원회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무 1명, 재무 1명을 두되, 공동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 교대로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황강취수장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③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제10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위원회에서 필요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조사·연구 의뢰)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기관이나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황강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의안 번호	2022-87

발의일자	2022. 11. 29.
발 의 자	박수자, 이홍희, 김홍섭 표주숙, 신중양, 김향란, 신재화,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의원

1. 제안 이유

황강취수장 설치 추진과 관련하여 범군민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4조)

나. 위원의 해촉, 제적, 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다.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라. 위원회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 · 제79조 · 제80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확보 예정(수당 등)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11. 23.~11. 28.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2년 12월 28일

거창군 조례 제2758호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2023년도 월정수당: 월 1,899,500원
2.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월정수당: 전년도 월정수당과 동일적용

제7조 중 “별표 5”를 “별표 6”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	**제6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월정수당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② 월정수당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2019년도 월정수당: 월 1,798,910원	1. 2023년도 월정수당: 월 1,899,500원
2.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월정수당: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	2.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월정수당: 전년도 월정수당과 동일적용
제7조(여비지급 기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여비지급 기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지급한다.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2-85

발의일자	2022. 11. 29.
발 의 자	김홍섭, 이홍희, 박수자, 표주숙, 신재화, 신중양,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의원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결정·통보된 의정비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변경된 여비지급 기준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월정수당 지급기준 금액 변경

1) 2023년: 2022년 월정수당과 동일적용

2) 2024년~2026년: 전년도 월정수당과 동일적용

나. 여비지급 기준 근거 변경: 별표 5 → 별표 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 제40조

2)「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나.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 250,735천원 확보예정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11. 25.~11. 3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2년 12월 28일

거창군 조례 제2759호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와 제103조에 따라 거창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회”를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과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

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의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의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제83조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는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에 따른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제103조에 따라 거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와 제103조에 따라 거창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 (생 략)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거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과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의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제83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는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에 따른다. <삭 제>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2-86

발의일자	2022. 11. 29.
발 의 자	김홍섭, 이홍희, 박수자, 표주숙, 신재화,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의원

1. 제안 이유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이 도입**됨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배치, 직무범위 및 지휘·감독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조항 정비(안 제1조)

1) 정책지원관 위임 법 조문 신설

2) 목적조항에 올 수 없는 약칭표현 삭제

나. 정책지원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의2)

1) 정책지원관의 배치, 직무범위, 지휘·감독사항 규정

다. 법령 재기재, 약칭표현 등 정비(안 제2조·제5조·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나.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 1억원 확보예정(행정과)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합의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11. 25.~11. 3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2년 12월 28일

거창군 규칙 제1352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담당관·국장·과장 직급) ①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전략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소관 과의 과장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2. 인구교육과장: 지방행정사무관
3. 민원소통과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4. 재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④ 경제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소관 과의 과장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기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2. 문화관광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3. 복지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4. 행복나눔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⑤ 안전건설국장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소관 과의 과장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총괄과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2. 산림과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3. 환경과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4. 건설교통과장: 지방시설사무관
5. 도시건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거창군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경제교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

② 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담당관·국장·과장 직급) ①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조(담당관·국장·과장 직급) ①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행정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전략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1. 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소관 과의 과장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미래전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1. 행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3. 인구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 인구교육과장: 지방행정사무관
4. 민원소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3. 민원소통과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5.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4. 재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6. 문화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경제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소관 과의 과장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복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1. 경제기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8. 행복나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2. 문화관광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③ 경제산업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3. 복지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1. 경제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4. 행복나눔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2.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안전건설국장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소관 과의 과장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총괄과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

현 행	개 정 안
3. 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4.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5.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6. 도시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무관 2. 산림과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3. 환경과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4. 건설교통과장: 지방시설사무관 5. 도시건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별표 1]

읍장·면장 직급(제6조 관련)

직 위	직 급
거창읍장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주상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웅양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고제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북상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위천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마리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남상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남하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신원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가조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가북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별표 2] 본청 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분장사무(제7조관련)

1. 기획예산담당관

부서	분장사무
기획예산 담당관	1. 군정의 기획·조정·통제 업무 2. 군정시책 종합평가 업무 3. 군정 중장기 계획수립 업무 4. 공약사업과 지시, 현안사항 종합관리 업무 5. 군 의회 운영 협력·지원·조정 업무 6. 부서별 업무계획 수립 총괄 7. 적극행정 업무 총괄 ~~8. 정부형, 경남형, 거창형 뉴딜정책 총괄~~ 8. 군정종합 우수시책 대외 응모 9. 공보·홍보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업무 10. 국·도·군정 시책의 홍보 및 언론 보도내용 분석 관련 업무 11. 군정 종합 기획홍보 관련 업무 12. 보도자료 작성 배포와 브리핑룸 관리 업무 13. 언론 매체 관리에 관한 업무 14. 군 재정운영과 예산편성에 관한 업무 15. 지방채 등 채무부담 행위에 관한 업무 16. 예산사업의 투자 심사에 관한 업무 17. 지방재정의 종합기획과 지방공기업·경영수익사업 관한 업무 18. 사업별 예산편성 운영 19.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관한 업무 20. 보조사업에 관한 업무 21. 예산운용에 관한 업무 22. 감사계획의 수립·감사와 특정감사 등에 관한 업무 23. 상급기관의 감사 수감과 처분요구사항 처리에 관한 업무 24. 법규위반 비위공무원 조사·처분과 고충민원 처리 25.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 윤리업무와 면책·소청 심사 관련 업무 26. 계약심사, 일상감사 운영 27. 자치법규 제·개정·폐지, 훈령·예규에 관한 업무 28. 소송, 행정심판 관련 업무 29. 인구동태 조사와 각종 통계에 관한 업무 30. 정책수립과 성과측정에 필요한 행정통계에 관한 업무 31. 외국인 통계와 관리에 관한 업무 32. 규제 종합계획 수립과 규제개선에 관한 업무 33. 혁신업무 총괄 **34. 생활공감 모니터링단 운영** 35. 그 밖에 기획, ~~공보,~~ **홍보**, 예산, ~~성과~~, 감사 및 규제혁신에 관한 업무

2. 전략담당관

부서	분장사무
전략담당관	1. 군정 현안・역점사업, 전략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2. 공모사업 총괄 3.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수립 등에 관한 업무 5. 행정의료타운 업무 총괄 6. 지역 책임의료기관 이전 신축에 관한 업무 7. 공공산후조리원, 행복맘커뮤니티센터 건립에 관한 업무 8. 공공기관 유치 및 기반 조성 9. 치유산업 정책 수립 및 육성에 관한 업무 10. 산림휴양 메카 조성에 관한 업무 11. 감악산 관광지 조성에 관한 업무 12. 테마형 산림휴양 조성에 관한 업무 13. 항노화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4. 거창 항노화 힐링 특구 업무 15. 농촌인력 업무 총괄 16. 외국인계절근로자사업에 관한 업무 17. 상시고용인력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 18. 화장장 건립 19. 공공건축물 건립(사업비 50억 이상) 20. 10억이상 공공건축물 공사·준공 감독 21. 그 밖에 전략, 행정의료타운, 치유산업, 공공시설에 관한 업무

3. 행정국

부서	분장사무
행정과	1. 각종 행사·의전 총괄 업무 2. 공무원 인사・상훈・조직・교육에 관한 업무 3. 공무원 정・현원 관리,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 정・현원 4. 공무원 징계에 관한 업무 5. 지방행정구역 조정, 읍・면 행정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6. 주요시책 추진 7. 일제강점 피해 관련 업무 8. 공무원 해외출장 등 공무원 능력개발에 관한 업무 9. 선거에 관한 업무 10. 서무, 공인관리, 보안에 관한 업무 11. 문서통제, 우편물 수발, 사무관리에 관한 업무 12. 공무원 보수·복무관리에 관한 업무

부서	분장사무
	13. 공무원단체 운영지원, 공무원노조에 관한 업무 14.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업무 15.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 16. 기록물 관리·수집·보존·활용에 관한 업무 17. 행정자료실 운영에 관한 업무 18. 주민자치센터 설치지원에 관한 업무 19. 주민투표, 지방분권,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등 지방행정 지원에 관한 업무 20. 기관・단체 현황관리, 주요단체 등 대외협력·지원에 관한 업무 21. 군정정보화와 지역정보화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업무 22. 공통기반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업무 23.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전자문서시스템 운영·관리 24. 그 밖에 다른 담당관·과에 속하지 않는 업무
인구교육과	1. 인구정책업무 전반 2. 인구증가 종합계획 수립 3. 저출산·고령·인구감소 대응계획 수립 4. 저출산·인구감소 대응 시책 발굴·추진 5. 청년정책 업무 총괄 6. 교육발전지원 종합계획 수립·조정 업무 7. 인재육성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업무 8. 초·중·고·대학 육성지원 업무 9. 장학사업에 관한 업무 10.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업무 11.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업무 12. 청소년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13. 도서관 관리·운영 업무 14. 그 밖에 인구정책, 청년정책, 교육진흥, 평생학습, 청소년, 도서관에 관한 업무
민원소통과	1. 민원사무 접수·처리 부서 종합조정에 관한 업무 2. 민원업무연구, 시책개발에 관한 업무 3. 창구민원 즉결 처리 관련 업무 4. 인터넷민원, G4C민원, 여권, 행정정보공개, 국민신문고 업무 5.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6.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에 관한 업무 7. 지적공부 보존관리 업무 8. 지적측량 검사, 지적측량 기준점 보존관리 업무 9.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업무 10. 토지이동 정리 등기촉탁 업무 11. 지적공부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업무

부서	분장사무
	12.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에 관한 업무 13.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 14. 부동산중개업소 관련 업무 15.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업무 16. 공간정보 관련 업무 17. 식품접객업 관리 업무 18. 식품제조가공업 등 관리 업무 19. 공중위생업 관리 업무 20. 위생면허 관리 업무 21. 지적재조사사업 업무 22. 세계측지계변환 업무 23. 도해지적 수치화 업무 24. 지적확정측량 업무 25. 그 밖에 민원, 지적, 토지정보, 위생, 지적 재조사에 관한 업무
재무과	1.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국세 위탁·징수에 관한 업무 2. 세원발굴, 세무조사에 관한 업무 3.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 4. 세출예산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업무 5. 각종 공사·용역·물품계약에 관한 업무 6. 복식부기 회계처리, 결산에 관한 업무 7. 세외수입 징수·지도, 체납징수 총괄 관리에 관한 업무 8. 세입금 관리와 결산에 관한 업무 9. 군 금고의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10. 국채와 지방채 소화에 관한 업무 11. 자금배정, 자금운영에 관한 업무 12. 재산의 취득·처분, 관리에 관한 업무 13. 공용차량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14. 물품구입, 출납보관 관리에 관한 업무 15. 청사, 관사 관리에 관한 업무 16.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에 관한 업무 17.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조사, 결정에 관한 업무 18. 개별공시지가조사·결정에 관한 업무 19.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 업무 20. 그 밖에 부과, 경리, 세입관리, 재산관리, 부동산평가에 관한 업무

4. 경제복지국

부서	분장사무
~~경제교통과~~ 경제기업과	1. 지역 경제활성화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전통시장 육성 관련 업무 3. 지역물가 안정관리에 관한 업무 4.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 5. 공산품 품질관리 관련 업무 6. 통상진흥 관련 업무 7. 담배소매인 등록 관련 업무 8. 통신·방문판매업 관련 업무 9. 기업육성을 위한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업무 10. 창업, 공장설립 승인 관련 업무 11.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업무 12. 중소기업 창업지원과 기업환경개선에 관한 업무 13. 산업·농공단지 조성·관리 업무 14. 승강기산업 관련업체, 유관기관 유치와 지원에 관한 업무 15. 투자 프로젝트사업 개발 관련 업무 16. 국내·외 기업, 산업자본 투자유치에 관한 업무 17.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업무 18. 노동단체관리 업무 19. 대부업·저축·금융기관 관리 관련 업무 20. 문화거리 활성화, 유지관리 관련 업무 21. 공예품, QC상품관리 관련 업무 22. 일자리 발굴, 추진 관련 업무 23. 채용박람회, 일자리안정자금 등 관련 업무 24. 전기, 석유, 가스, 수소 등 에너지관리 관련 업무 25. 태양광, 광업권 관련 업무 ~~27. 교통안전 관련 업무~~ ~~28. 교통질서 계도, 단속 관련 업무~~ ~~29. 여객, 화물자동차 관리 관련 업무~~ ~~30. 여객운수업 재정지원 관련 업무~~ 26. 그 밖에 시장경제, 기업승강기, 투자유치, 공동체일자리, 에너지에 관한 업무
문화관광과	1. 문화예술단체의 육성, 예술 활동 지원 업무 2. 문화정책·문화시설·문화예술복지에 관한 업무 3.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업무 4. 향교 및 종교단체의 지원 관리 5. 군지, 향지 편찬에 관한 업무

부서	분장사무
	6. 공연장, 공연에 관한 업무 7. 문화산업에 관한업무 8. 거창문화재단, 거창문화원에 관한 업무 9. 관광기본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업무 10. 거창한마당축제 관련 업무 11. 감악산 해맞이 축제 12. 관광상품 및 관광홍보에 관한 업무 13. 관광지 지정, 조성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업무 14. 온천지구 지정, 개발관리 업무 15. 관광자원 개발 16.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관한 업무 17. 매장문화재 등 비지정문화재 관리에 관한 업무 18. 천연기념물 관련 업무 19. 박물관 관리에 관한 업무 20. 근대의료박물관 운영에 관한 업무 21. 수승대 운영에 관한 업무 22. 목재문화체험장에 관한 업무 23. 그 밖에 문화예술, 관광정책, 문화재, 박물관, 수승대에 관한 업무
복지정책과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평가 2. 보훈단체 및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업무 3. 아림1004운동 추진에 관한 업무 4.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 관리와 운영 5. 재해구호에 관한 업무 6.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희망복지지원단 운영·관리 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8. 자원봉사센터 운영, 단체 지원 9. 긴급지원 및 공동모금회 연계 지원 10. 지역사회서비스투자·가사간병방문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11. 복지대상자 신규·변경 신청 조사 12. 사회보장급여 자격 변동, 사후관리 13.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확인조사 1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권한관리 15.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관리, 급여지원 16. 저소득층 복지지원 17. 자활센터 운영지원 및 자활근로사업관리 18.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 19.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영 20. 그 밖에 복지정책, 희망복지, 통합조사, 기초생활에 관한 업무

부서	분장사무
행복나눔과	1. 노인복지 시설, 단체 관련 업무 2. 노인사회참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업무 3. 장사 등에 관한 업무 전반 4. 장기요양관련 업무 전반 5. 노인복지기금 관리 및 운용 6. 장애인 생활안정에 관한 업무 7. 장애인 편의지원에 관한 업무 8. 장애인복지 시설, 단체 운영에 관한 업무 9. 장애인자립, 사회참여활동 지원 10. 여성권익신장, 역량강화에 관한 업무 11.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에 관한 업무 12.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업무 13. 보육료지원에 관한 업무 14. 어린이집 설치·인가·관리에 관한 업무 15.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에 관한 업무 16. 아동복지시설 지원, 관리에 관한 업무 17.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자보호 업무 18. 장난감은행,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업무 19. 가정위탁, 요보호아동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20.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21. 그 밖에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보육, 드림아동에 관한 업무

5. 안전건설국

부서	분장사무
안전총괄과	1. 지역안전, 재난관련 종합기획·조정, 평가 등 총괄에 관한 업무 2. 재난현장 지휘소 운영 3. 재난상황실,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관한 업무 4. 유·도선장 관리 업무 5.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련 업무 6. 실종 등 인적재난 대응에 관한 업무 7. 자연재난피해 응급복구대책수립 추진 업무 **8.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9. 중대재해 예방 종합대책 수립·시행** **10. 중대재해 처벌법 의무이행 사항 총괄 관리** **11. 안전·보전 조치 이행 여부 확인 관리** 12. 재해위험지구 관리 및 안전점검 관련 업무

부서	분장사무
	13. 유관 기관단체 재난관련 협의 조정 업무 14. 재해영향성평가 업무 15.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 업무 16. 중점관리대상시설 지정·안전점검·관리업무 17. 방재 전산훈련 업무 18. 안전문화운동 전개, 교육 홍보 업무 19. 재난대비 동원계획 수립 운영관련 업무 20. 120기동대, 자원봉사대 운영관련 업무 21. 생활불편해소 관련 업무 22.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 23. 민방위계획수립 및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업무 24. 민방위대 조직, 편성, 동원 업무 25. CCTV관제에 관한 업무 26. 행정통신망, 정보통신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27. 그 밖에 안전관리, 자연재난, 안전점검, **중대재해예방**, 민방위, 통신관제에 관한 업무
산림과	1. 산림종합계획의 수립 업무 2. 산림자원 개발・이용에 관한 업무 3. 토석·토사 채취 허가 관련 업무 4. 양묘, 조림사업, 사방사업 관련 업무 5. 단기임산물 관련 업무 6. 산지소득, 임업단체 관련 업무 7. 화강석 특화 육성 관련 업무 8. 보안림 지정・해제 관련 업무 9. 산지전용허가, 변경 관련 업무 10. 산림보호, 부정 임산물 단속, 산림사범 관련 업무 11. 불법 산림훼손에 관한 업무 12. 산림병해충 관련 업무 13. 임도시설 관리 관련 업무 14. 산림경영계획 관련 업무 15. 제재소 지도・감독 관련 업무 16. 산불예방, 진화 관련 업무 17. 백두대간 주민소득사업 및 보호 관련 업무 18. 도시공원·자연공원 조성 및 관리 19. 가로수 식재·관리 관련 업무 20. 푸른 거창가꾸기 관한 업무(푸른경남 및 생활주변 나무심기) 21. 녹지공간 조성·관리 업무 22. 꽃길·꽃동산 조성·관리 업무

부서	분장사무
	~~23. 항노화산업 육성 관련 사업~~ ~~24. 항노화 힐링 특구 관련 업무~~ 23. 자연휴양림·산림욕장·수목원 조성·관리에 관한 업무 24. 산림 내 편의시설에 관한 업무 2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업무 26. 빼재 산림레포츠파크 조성 관련 업무 27. 산림레포츠 시설 운영 총괄 28.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총괄 29. 힐링랜드 야외시설 운영 관리 업무 30. 그 밖에 산림조성, **산림소득**, 산림보호, 공원녹지, 산림레포츠 파크, 항노화힐링랜드에 관한 업무
환경과	1. 환경기본계획, 환경정책에 관한 업무 2. 대기, 소음·진동, 토양, 악취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 3.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추진 4.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 업무 5. 탄소포인트 제도, 온실가스 감축 추진 6.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환경사범 수사 7. 미세먼지 감축 추진 사업 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신고 9.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및 소각시설 위탁 운영 관리 10. 생활·건설·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업무 11. 사업장폐기물(일반,지정,의료) 관련 업무 12. 매립시설, 재활용선별장, 공중화장실 관리 13. 영농폐기물(집하장 등) 시설물 설치·관리 14. 수질보전, 수질개선 업무 추진 15. 낙동강수계주민지원, 수질오염총량제 추진 16. 분뇨,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관리 17.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 관리 18. 폐수배출시설, 비점오염원 관리 19. 지하수 관리업무 추진 20.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등 자연보호 업무추진 21. 야생 동·식물 관리 및 보호 22. 생태습지원, 생태공원 관리 23.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 관리업무 추진 24. 창포원, 국화원, 연꽃수련원 등 수변생태공원 관리 25. 방문자센터, 온실 등 유지 관리 26. 에코에너지 체험학습관 운영 27. 그 밖에 환경정책, 자원순환, 수질관리, 자연환경, 창포원에 관한 업무

부서	분장사무
건설과 **건설교통과**	1. 건설업 관리 업무 2. 군 건설종합계획의 수립·추진 업무 3.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업무 4.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업무 5. 보상에 관한 업무 6. 건설기계 관리감독 관련 업무 7. 농지개발사업계획 수립·시행 업무 8. 농업용수개발, 개·보수사업 추진 업무 9. 경지정리 및 밭 기반정비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업무 10. 농업기반공사의 시행감독 및 관개 개선 업무 11. 농어촌 정주권 개발계획 수립과 추진 업무 12. 한해대책, 장비 유지관리 업무 13. 하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업무 14. 하천공사 시행관련 업무 15. 하천의 개량·정비 및 유지관리 업무 16. 골재채취 허가에 관한 업무 17.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시행 업무 18. 지방도 유지관리 업무 19. 도로굴착 점용 허가, 점용료 부과 업무 20. 교량 유지, 사도관리에 관한 업무 21. 과적차량 단속 업무 **22. 교통안전 관련 업무** **23. 교통질서 계도, 단속 관련 업무** **24. 여객, 화물자동차 관리 관련 업무** **25. 여객운수업 재정지원 관련 업무** 26. 그 밖에 건설, 농업기반, 하천, 도로, **교통**에 관한 업무
도시건축과	1. 군 기본계획·관리계획의 입안과 시행 관련 업무 2. 군계획시설 사업 관련 업무 3. 개발행위 허가·협의, 불법개발행위 관련 업무 4.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관련 업무 5. 옥외광고물 허가,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관련 업무 6. 택지개발, 토지구획정리 관련 업무 7. 군계획구역내 도시정비 관련 업무 8.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업무 9.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및 설치 관련 업무 10. 아카데미파크 조성사업 관련 업무 1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사용검사 관련 업무 12.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관리 관련 업무

부서	분장사무
	13.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관련 업무 14. 주거 급여 관련 업무 15.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 업무 16. 건축허가・신고, 건축물 관련 인・허가 관련 업무 17. 농지전용협의・허가, 용도변경 관련 업무 18. 건축과 관련한 개발행위 허가 관련 업무 19. 건축물대장 작성 및 관리 관련 업무 20.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준비, 사업추진 관련 업무 21. 도시재생 지원센터 구축, 협의체 등 운영 관련 업무 22.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도시경관 계획 관련 업무 23. 친환경 녹색 건축물 사업 추진 관련 업무 24. 그 밖에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재생, 스마트도시,** 건축행정, 건축민원에 관한 업무

6. 농업기술센터

부서	분장사무
농업축산과	1. 농업기술센터 내 직원 인사·복무·회계·예산 운영 관련 업무 2. 농정시책 및 사업의 확인, 심사, 분석, 평가 3. 물품과 재산 관리 업무 4. 농업・농촌발전 대책 관련 업무 5. 농지보존, 불법 농지전용에 관한 업무 6. 농림사업 계획 수립,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운영 관련 업무 7. 농산물 대축제 관련 업무 8.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관련 업무 9. 수입개방 대응 및 농업 경쟁력 제고 시책 발굴 추진 관련 업무 10. 자유무역협정 농·수·축산업 대책 중장기 계획수립 추진 관련 업무 11. 자유무역협정(FTA), 도하개발아젠다(DDA) 등 종합대책 관련 업무 12. 농업발전기금, 진흥기금 관련 업무 13. 강소농과 농업경영개선 지원 업무 14. 지도・연구공무원 능력 향상에 관한 업무 15. 농산물 소득조사 업무 16. 농업인단체·농업인학습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 17.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관련 업무 18. 농업인 영농교육, 농업인대학 관련 업무 19. 농촌여성능력개발 교육 업무 20. 농촌자원분야 시범사업 관련 업무

부서	분장사무
	21. 후계 농업경영인·산업기능요원 관리 업무 22. 여성농업인 지원사업 관련 업무 23. 축산물 기반조성 및 유통개선사업 관련 업무 24. 축산단체 관리 및 행사지원에 관한 업무 25. 가축개량 및 송아지 생산 관련 업무 26. 조사료 생산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 관련 업무 27. 내수면 어업, 수산물 관련 업무 28. 축산 재해, 생산이력제 사업 관련 업무 29. 친환경축산, 축산분뇨 처리 관련 업무 30. 경관보전직불 업무 31. 가축방역 대책, 가축전염병 방역 관련 업무 32. 도축장 시설 설치·지원·관리에 관한 업무 **33. 반려동물산업정책 및 종합계획 수립** **34.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추진** **35. 동물등록제 추진업무** **36. 동물관련영업장 등록관리** 37. 유기동물 등 동물보호법 관련 업무 38. 공수의 관리, 동물병원·약국 관리 관련 업무 39. 축산물 판매·유통 대책 관련 업무 40. 가축질병진단실 운영, 축산 시범사업 관련 업무 41. 농업기계화사업 관련 업무 42. 그 밖에 농정, 농업지원, 축산, 가축방역, **동물복지**, 농기계에 관한 업무
농업기술과	1. 식량작물 생산 및 기술지원 관련 업무 2. 벼 병해충 예방 및 방제 관련 업무 3. 식량작물 보급종 공급, 채종단지 운영 관련 업무 4.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관련 업무 5. 농약·비료 관리 및 지원 관련 업무 6. 농촌일손 돕기, 농업재해 업무 7. 정부 양곡관리 관련 업무 8. 원예, 특작분야 신기술 도입, 시범사업 관련 업무 9. 원예 특작 적정 생산 계획, 기술지도 업무 10. 종자산업법 관련 업무 11. 특화작목 육성, 시설물 재해대책 관련 업무 12. 잠업 생산 지원 및 실증시험 업무 13. 과수재배 기술보급·지원 관련 업무 14. 거창 사과 딸기 산업특구 관련 업무 15. 사과테마파크, 사과이용체험센터 관리운영 업무 16. 농작물 재해보험, 거창명품사과 홍보 관련 업무

부서	분장사무
	17. 과수 시범사업, 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업무 18. FTA기금 고품질 과수생산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업무 19. 탑프루트 시범단지 육성 및 관원관리 IPM사업 업무 20. 농산물 수출 종합대책, 해외시장개척 21. 수출농가·수출업체 육성과 수출활성화 지원 업무 22. 산지유통 종합계획 추진 23. 서북부경남 산지유통센터(APC)운영·지원 관련 업무 24. 산지유통시설 관련 업무 25. 산지유통·통합마케팅 고도화 전략 수립 26. 통합마케팅 조직과 공선출하조직육성 관련 업무 27. 농산물공동브랜드(거창韓) 육성·지원 관련 업무 28.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육성·지원 업무 29. 농산물 물류 표준화, 원산지표시, 생산이력제 업무 30.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육성 및 지원 관련 업무 31. 친환경농업 및 토종농산물 직불금 관련 업무 32.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및 시범사업 관련 업무 33. 친환경 비료 지원에 관한 업무 34.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관련 업무 35. 천적생태과학관 관련 업무 36. 실증시범포 운영 관련 업무 37. 조직 배양실 운영 관련 업무 38. 농약잔류검사 및 토양정밀 검정에 관한 업무 39. 가축분뇨퇴비 부숙도 검사 업무 40. 그 밖에 식량작물, 원예특작, 과수, 수출유통,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에 관한 업무
행복농촌과	1. 행복농촌과 관련 기본계획 수립·총괄·조정 2.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역량강화 교육 3.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립·운영 4. 마을만들기 관련 DB구축과 법령·제도 개선 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 공모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 시행, 사후유지 관리 7.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 ~~8. 농산물 수출 종합대책, 해외시장개척~~ ~~9. 수출농가·수출업체 육성과 수출활성화 지원 업무~~ ~~10. 산지유통 종합계획 추진~~ ~~11. 서북부경남 산지유통센터(APC)운영·지원 관련 업무~~ ~~12. 산지유통시설 관련 업무~~ ~~13. 산지유통·통합마케팅 고도화 전략 수립~~

부서	분장사무
	~~14. 통합마케팅 조직과 공선출하조직육성 관련 업무~~ ~~15. 농산물공동브랜드(거창韓) 육성·지원 관련 업무~~ ~~16.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육성·지원 업무~~ ~~17. 농산물 물류 표준화, 원산지표시, 생산이력제 업무~~ 8.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지원 관련 업무 9.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 10. 농식품 가공산업 관련 업무 11.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업무 12. 향토음식, 전통주 육성 관련 업무 13. 귀농·귀촌 관련 업무 14. 귀농귀촌인 상담센터 운영 15. 도시민농어촌유치지원 관련 업무 16. 농촌민박 및 관광농원 관련 업무 17. 농촌체험 및 사이버농원 육성·지원 관련 업무 18. 거창푸드플랜 수립·시행 19.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20. 학교급식 지원 관련 업무 21.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 관리 22. 로컬푸드 활성화 관련 업무 23. ~~농산물직거래 장터,~~ 거창군 쇼핑몰 관련 업무 **24. 외식산업 진흥 육성 관련 업무** 25. 그 밖에 농촌진흥, 농촌개발,~~수출유통~~, 농촌융복합, 귀농귀촌, 지역식품에 관한 업무

7. 보건소

부서	분장사무
보건정책과	1.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 및 시행 2.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3.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 4. 건강검진 등 신고 업무 5. 보건복지 및 의약품안전실시계획 수립·시행 6. 공공시설의 계획 및 운영,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7.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8. 각종 예방접종에 관한 업무 9. 비상방역대책 수립 및 방역에 관한 업무 10. 각종 질환 등에 대한 진단검사

	11. 생물테러 대비·대응관리 12. 감염병 환자, 접촉자 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 13. 신종감염병 대비·대응 관리 14. 각종 생활방역에 관한 업무 15. 만성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6. 진단용 방사선, 특수의료장비, 의료업소 등에 관한 사항 17.「의료법」·「약사법」, 「의료기기법」, 마약류(화장품 포함) 인가·허가 및 단속에 관한 사항 18.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에 관한 사항 19. 보건의료 재난대응 및 국가안전대진단 업무 20. 공공의약 및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21. 진료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2. 모자보건 사업~~ 22. 민원실 운영 및 민원업무 처리 23. 각종 건강검진 업무 24.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 25. 그 밖의 ~~보건행정~~ **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과	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 건강생활실천사업(영양, 신체활동, 비만예방관리, 절주)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금연클리닉)사업 4.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5.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 6. 건강플러스·행복플러스사업 7. 지역사회협의체 및 사례관리 위원회 운영 8. 건강증진사업 보건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건강증진 환경조성사업 10.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11.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ICT활용 원격의료) 12. 정신건강증진사업(정신건강복지센터 포함)에 관한 사항 13. 정신의료기관 관리 14. 자살예방에 관한 사항 15. 암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16. 재가 암환자 관리 및 지원 사업 17. 건강주치의제 운영 18.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 19.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20. 구강보건사업(학교 포함) 21. 심뇌혈관질환(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포함) 예방관리사업

	22. 지역사회건강조사 및 국민건강영양조사 업무 23.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추진 24. 방문건강관리 사업 25.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26. 모자보건사업 27. 치매안심센터 운영 28. 치매예방관리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9. 그 밖의 건강증진업무 등에 관한 사항

8. 사업소

부서	분장사무
수도사업소	1. 상·하수도관련 기본계획, 재정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업무 2. 상·하수도·하수처리장사업과 그에 부대되는 사업에 관한 업무 3.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에 관한 업무 4. 상하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5. 간이급수시설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6.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에 관한 업무 7.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업무 8.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에 관한 업무 9. 취·정수장 운영에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상하수도 업무에 관한 업무
체육시설 사업소	1. 체육진흥 종합 기획·조정 2. 체육단체 육성에 관한 사무 3. 체육시설업, 수상레저사업 지도 관리 4. 골프장 개발 관리 5. 스포츠파크 총괄 운영 관리 6. 체육시설 유지·관리, 개발에 관한 사무 7. 읍면 체육시설(운동기구) 총괄 관리 8.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9. 국민체육센터 시설물 유지 보수 10. 체육지도자, 시설전문관리인 채용 및 운영 관리 11.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업무 12.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지원 13.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 14. 그 밖에 체육진흥, 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업무

부서	분장사무
거창사건 사업소	1. 거창사건사업소 운영계획 수립과 종합조정 ~~2. 위령제, 추모식 등 각종 문화행사 기획운영~~ 2. 거창사건희생자 유족회 지원 및 명예회복사업 3. 거창사건희생자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 봉행 4. 거창사건사업소 시설물 유지 관리 ~~4. 국화전시회에 관한 업무~~ 5. 국화관람회 개최 6. 그 밖에 거창사건에 관한 업무

9. 읍·면

부서	분장사무
읍·면	1. 행정리 지도 관련 업무 2. 선거 및 통계 관련 업무 3. 세입징수 및 독려 관련 업무 4. 세원조사 및 세외수입 관련 업무 5. 가족관계등록 관련 업무 6. 주민등록, 인감, 제증명 발급 관련 업무 7. 민방위 관련 업무 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업무 9.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등 복지 관련 업무 10.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업무 11. 농업, 축산, 산림, 경제 관련 업무 12. 소규모 주민사업 관련 업무 13. 광고물 관리 업무 14. 재난·재해 관련 업무 15. 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 16. 그 밖에 군수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22-90

제출연월일	2022. 12. 20.
제 출 자	행정과장

1. 제안 이유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본청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직급,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부서별 사무분장,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1국(局) 및 1담당관의 신설과 그에 따른 직급 신설(안 제3조)

1) 안전건설국: 서기관·기술서기관

2) 전략담당관: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시설사무관

나. 행정기구 명칭 변경 및 직급 조정(안 제3조)

1) 행정복지국 ⇒ 행정국

2) 경제산업국 ⇒ 경제복지국

가) 현행: 서기관·기술서기관

나) 조정: 서기관

3) 경제교통과 ⇒ 경제기업과

4) 환경과

가) 현행: 행정·공업·환경사무관

나) 조정: 행정·농업·환경·시설사무관

5) 건설과 ⇒ 건설교통과

다. 읍·면장 직급 조정(안 별표 1)

1) 거창읍장

가) 현행: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나) 조정: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시설사무관·농업사무관

2) 위천면장

가) 현행: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시설사무관·농업사무관

나) 조정: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농업사무관

라. 본청 담당관·과, 직속기관의 분장사무 변경(안 별표 2)

마. 정원 관리기관별 직급, 직렬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1) 일반직 4급: 증1명

가) 본청(증1명): 서기관

2) 일반직 4~5급: 감1명

나) 읍(감1명):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3) 일반직 5급: 증1명

가) 본청(증1명): 행정·농업·환경·시설1

나) 본청(감1명): 행정·공업·환경1

다) 의회(감2명): 행정2

라) 의회(증2명): 행정·시설2

마) 읍(증1명): 행정·사회복지·시설·농업1

바) 면(증1명): 행정·시설·농업1

사) 면(감1명): 행정·사회복지·시설·농업1

4) 일반직6급: 증1명

가) 본청(증8명): 행정1, 시설1, 행정·사회복지1, 행정·시설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1, 행정·농업2, 행정·공업1

나) 본청(감8명): 세무1, 행정·세무·사회복지·농업1, 사회복지·보건·의료기술·간호1, 행정·농업·녹지·시설1, 전산·방송통신1, 행정·농업·시설2, 사무운영·기계운영·운전·위생1

다) 농업기술센터(증1명): 행정·농업1

라) 읍(증1명): 행정1

마) 읍(감1명): 사무운영·토목운영·위생·방호1

5) 일반직7급: 증1명

가) 본청(증7명): 행정2, 시설1, 행정·공업1, 행정·농업1, 행정·간호1, 행정·농업·시설1

나) 본청(감4명): 행정·사회복지2, 농업·녹지1, 행정·공업·농업1

다) 농업기술센터(증1명): 행정·농업1

라) 농업기술센터(감1명): 행정1

마) 보건소(감1명): 행정·보건1

바) 면(감1): 농업·녹지1

6) 일반직8급: 감3명

가) 본청(증5명): 행정3, 행정·사회복지1, 행정·농업·녹지1

나) 본청(감7명): 세무1, 행정·세무1, 행정·시설1, 행정·사회복지·보건1, 행정·공업·환경1, 행정·보건·간호1, 시설·방재안전1

다) 읍(감1명): 위생·방호1

라) 면(증1명): 행정·세무1

마) 면(감1명): 행정·사회복지1

7) 일반직9급

가) 본청(증4명): 행정3, 시설1

나) 본청(감4명): 행정·공업·환경1, 운전1, 위생1, 방호1

다) 사업소(증1명): 행정·시설1

라) 사업소(감1명): 토목운영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30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12. 9.~12. 20.

나) 예고결과: 의견 있음(입법예고 결과요약서 붙임)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검토의견	처리결과 (통보내용)
농업기술센터	○직렬 조정 (원안) 행정·시설 7급 감1 (의견) 행정7급 감1	○ 농촌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시설직 인력 증원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반영
	○분장사무 삭제 (행복농촌과) 23. 농산물직거래장터	○ 업무 폐지로 삭제	반영
산림과	○산림소득담당이 신설됨에 따라 정원 1명 증원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산림조성 및 소득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명 증원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농업·녹지 8급 증1 - 시설·방재안전 8급 감1	반영
거창사건사업소	○분장사무 조정 (원안) 2. 위령제, 추모식 등 각종 문화행사 기획운영 4. 국화전시회에 관한 업무 (의견) 2. 거창사건희생자 유족회 지원 및 명예회복사업 3. 거창사건희생자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 봉행 5. 국화관람회 개최	○현실에 맞게 명칭 변경 및 업무 현실화	반영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2년 12월 28일

거창군 규칙 제1353호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22-91

제출연월일	2022. 12. 20
제 출 자	행정과장

1. 제안 이유

조직개편에 따른 전결사항 신설·폐지 및 이관 등을 정비하고 3국체제 개편에 따른 책임국장제도 정착과 국장의 책임과 권한 강화를 위하여 국장 전결권을 확대하는 등 행정사무의 능률적인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른 전결사항 신설·폐지 및 이관 등 정비(안 별표)

1) 신설: 안전건설국, 전략담당관

2) 폐지: 미래전략과

3) 이관: 경제기업과, 건설교통과

나. 국장 전결권 확대(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0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12. 9.~12. 20.

나) 예고결과: 의견있음(입법예고 결과요약서 붙임)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검토의견	처리결과 (통보내용)
인구교육과	○청년정책 업무에 대한 전결사항 추가	○미반영된 업무로 추가 적절	반영
문화관광과	○박물관 업무에 대한 전결사항 추가	○미반영된 업무로 추가 적절	반영
도시건축과	○사무전결사항 현실에 맞게 조정	○전결사항 조정	반영
농업기술센터	○업무 이관에 따라 사무전결사항 이관 ○업무 폐지에 따라 사무전결사항 삭제	○전결사항 이관 및 폐지	반영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2년 12월 28일

거창군 규칙 제1354호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2(사업장폐기물 운반비용 지원)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관내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 운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거창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일 것
2.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가 수리된 것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운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2(사업장폐기물 운반비용 지원)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관내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 운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거창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일 것 2.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가 수리된 것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운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사업장폐기물 운반비용 지원

나. 관련 조문: 제17조의2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합계
군비	100	100	100	100	100	500

3. 관련 의견

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재로 입주기업에게 사업장 폐기물 운반비용을 지원하여 일반산업단지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가. 사업장폐기물 운반비용 지원

1) 2023년도 예산 100백만원

2) 10개업체 × 10백만원 = 100백만원

작성자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22-72

제출연월일	2022. 11. 22.
제 출 자	미래전략과장

1. 제안 이유

거창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폐기물처리 운반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거창일반산업단지 사업장폐기물 운반비용 지원근거 마련(안 제17조의2)

1) 근거: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제22조

2) 목적: 거창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 활성화

3) 기준

(가) 거창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일 것

(나)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가 수리된 것일 것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1) 「지방자치법」 제29조

2)「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제22조

나.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 100백만원 확보 예정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10. 31.~11. 2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양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2년 12월 28일

거창군 규칙 제1355호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임신·출산지원분야 중 출산축하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야	세부 사업명	지원 기준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임신·출산 지원	출산 축하금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산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는 부 또는 모	가. 첫째 ~~100만원~~ **500만원** 나. 둘째 ~~200만원~~ **500만원** 다. 셋째 이후 ~~300만원~~ **500만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 출산 축하금 지원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출산축하금 지원

나. 관련 조문: 안 별표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합계
군비	1,250	1,250	1,250	1,250	1,250	6,250

3. 관련 의견

첫째도 안 낳는 사회 분위기를 개선하고, 출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일시금으로 지급, 첫째·둘째·셋째 구분 없이 증액 지원하고자 함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가. 출산축하금 5,000천원 * 250명 = 1,250,000천원

작성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22-86

제출연월일	2022. 12. 12.
제 출 자	인구교육과장

1. 제안 이유

현재 첫째·둘째·셋째 이상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하는 출산축하금을 구분 없이 대폭 증액 지원하여 출산·양육 지원의 체감효과를 높여 인구증가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축하금 증액(안 별표)

1) 첫째 100만원 ⇒ 500만원

2) 둘째 200만원 ⇒ 500만원

3) 셋째 이후 300만원 ⇒ 500만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 제29조,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제2조

나. 예산조치: 2023년 예산 1,250백만원 확보예정

다.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11. 9.~11. 29.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2년 12월 28일

거창군 규칙 제1356호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기준) ① 조례 제20조의2에 따른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사업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 방법: 거창사랑상품권 또는 현금
2. 지급 금액: 20만원 이내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 지원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별표의 제3호란 다음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업명	세부지원 기준
4. 청년수당	가. 지원기준 1) 공고일이 속한 연도 19세 이상 45세 이하 미혼 청년일 것 2)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군 소재 직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을 것 4)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30퍼센트 이하일 것 나. 지원 방법 및 금액 1) 생애 한 번만 2) 200만원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5조(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기준) ① 조례 제20조의2에 따른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사업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 방법: 거창사랑상품권 또는 현금 2. 지급 금액: 20만원 이내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 지원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거창군 청년 디딤돌 통장 가입신청서

접수번호	❍ 빈칸에 기입하거나, □에 √표 하세요. ❍ 기재사항의 허위·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으니, 아래 칸에 충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공란이 있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Ⅰ. 기본정보				
인적사항	신청자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이메일	
	최종 학력	**☐ 고등학교졸업 ☐ 대학교(재학,휴학) ☐ 대학교졸업 ☐ 대학원이상 ☐ 그 밖에**		
	결혼 여부	☐ 미혼 ☐ 기혼		
	거창군 거주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1년 미만 ☐ 1년 이상~3년 미만 ☐ 3년 이상~5년 미만 ☐ 5년 이상 ※ 거창군 최종 전입일**부터** 공고일까지 기간		
가구 및 소득	가구 특성	☐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 가구 ☐ 그 외 일반 가구		
	가구원 수 (신청자 포함)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이상 (가구원 수:) ※ (미혼-본인 및 부모(주민등록등본상), 기혼-본인 및 배우자, 자녀포함)		
노동사항	**노동**유형	☐ 임금 노동자(상용직. 임시직) ☐ 일용직 ☐ 사업소득자 ☐ 농어업소득자 ☐ 축산업소득자 ☐ 임업소득자 ☐ 그 밖의 유형( ) ※ (공고일 기준 최근 60일)		
	근무처 (사업장)명		근무처 연락처	
	근무처 주소			

자산 수준	주거현황	☐ 자가 ☐ 무상거주 ☐ 1억원이상 전월세 ☐ 5천만원이상~1억원미만 전월세 ☐ 2천만원이상~5천만원미만전월세 ☐ 2천만원 미만 전월세
	자동차 (본인)	☐ 2,000cc 이상 ☐ 1,600cc이상~2,000cc미만 ☐ 1,000cc이상~1,600cc미만 ☐ 1,000cc미만 경차 ☐ 차량 없음 ※ 본인 차량이 2대 이상일 경우 모두 표시
	자동차 (가구원)	☐ 2,000cc 이상 ☐ 1,600cc이상~2,000cc미만 ☐ 1,000cc이상~1,600cc미만 ☐ 1,000cc미만 경차 ☐ 차량 없음
	부채상황	☐ 신청자 대출금(만원, 내역:) ☐ 없음
Ⅱ. 입금 받을 계좌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Ⅲ. 적립금 마련 사용계획 등		
신청동기	거창군 디딤돌 통장사업에 신청하게 된 동기에 대해 작성해주세요.	
적립금 마련계획	※ 매달 납입할 적립금을 어떤 방법으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간략히 작성해주세요	
적립금 사용계획	다음 중 복수 항목 선택 가능 ☐ 구직활동비 ☐ 창업자금 ☐ 결혼자금 ☐ 주거비 ☐ 학자금대출 상환 ☐ 그 밖의 계획( )	

신청인 제출서류	
1. 가입 신청서 1부. 3. 통장사본 1부. 5. 소득재산신고서 1부 4. 사용대차확인서 1부.	2. 개인정보 동의서 1부. 4.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1부. 5. 고용·임금확인서 1부

1. 위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한 어떤 서류도 반환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위의 내용 및 별지 사업 공고문과 신청 안내문을 확인하였고 해당내용에 동의합니다.

3. 본인은 거창군 청년 디딤돌통장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본인 및 가족의 인적사항, 소득, 재산 등의 확인을 위하여 정보조회를 하는 데 동의합니다.

4. 신청조사와 별도로 가입기간 중 실시하는 확인조사를 통해 기준 부적합 시 중도해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거창군 청년 디딤돌 통장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읍면(접수)	성명	(서명 또는 인)
	거창군	성명	(서명 또는 인)

※ '확인자 서명란'은 신청자가 기재하지 않으니, 비워두시면 됩니다.

거창군수 귀하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22-74

제출연월일	2022. 11. 23.
제 출 자	인구교육과장

1. 제안이유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청년수당과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의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수당 지원 기준을 정함(안 별표)

1) 금액: 200만원

2) 대상

(가) 공고일이 속한 연도 19세 이상 45세 이하 미혼 청년이고

(나)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다)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군 소재 직장에 계속 근무하고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30퍼센트 이하일 것

나.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기준을 정함(안 제5조)

1) 금액: 20만원 이내

2) 방법: 거창사랑상품권 또는 현금

다. 불필요한 정보수집 항목 삭제(안 별지 제2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9조,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제16조의2·제20조의2

나.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 203백만원 확보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11. 3.~11. 23.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2년 12월 28일

거창군 규칙 제1357호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거창군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운영시간) 「거창군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료실: 9시부터 18시까지
2. 자유열람실 및 북카페: 9시부터 22시까지(다만 휴관일은 9시부터 18시까지)

제2조제1항 중 “군수”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출”을 “도서관 외 대출(이하 “대출”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군”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로 “부모(보호자)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부모(보호자)동의를 받아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공무원증을 말한다)을 제출해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종전 제2호) 중 “절취한”을 “훔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 제6조) 중 “대출일로부터”를 “대출일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조례”로 “위원회”를 “거창군 도서관운영위원회”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자료대출)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대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군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군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이면서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3.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4. 책이음회원(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어디서든 대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1. 희귀 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논문집
3. 각종 신문자료
4.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5. 그 밖에 군수가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6조제2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일로부터”를 “일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중 “때”를 “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동일”을 “같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면 같은 조 제3항 중 “동일하게”를 “같게”로 한다.

제11조와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부속시설 이용신청) 다목적실과 시청각실(이하 “부속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개시 5일 전까지, 허가사항을 변경(1회에 한정함)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개시 2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부속시설 이용(변경)허가 신청서 1부(별지 제8호서식)
2. 이용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제12조(부속시설 이용시간) 군수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부속시설의 이용을 허가할 경우 이용일과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일: 도서관 개관일
2. 이용시간: 9시부터 22시까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삭제한다.

제16조와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거창군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면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호서식·제2호서식·제9호서식·제10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거창군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신 설>	제1조의2(운영시간) 「거창군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료실: 9시부터 18시까지 2. 자유열람실 및 북카페: 9시부터 22시까지(다만 휴관일은 9시부터 18시까지)
제2조(도서관의 이용제한) ① 군수는 도서관의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출받지 않은 자료의 관외 유출행위 2.~6. (생 략) ③ (생 략)	제2조(도서관의 이용제한)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서관의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서관 외 대출(이하 “대출”이라 한다)받지 않은 자료의 관외 유출행위 2.~6.(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도민(초등학생 이상) 또는 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군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 하되,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초등학생의 경우는 회원	제3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도민(초등학생 이상) 또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군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 하되,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입시 부모(보호자)동의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1. 회원 가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공무원증)	다만, 초등학생의 경우는 회원 가입시 부모(보호자)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공무원증을 말한다)을 제출해야 한다.
제5조(회원자격의 상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다른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람 2. 대출 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시키거나 절취한 사람 3. 자료를 허락 없이 자료실 밖으로 반출시키려한 사람 4. 도서를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 5. 최종 자료 대출일로부터 2년 이상 대출이 없는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회원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② 회원 자격이 상실된 사람 중에서 군수가 도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③ 회원자격 상실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는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회원자격의 상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삭 제> 1. 대출 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시키거나 훔친 사람 2. 자료를 허락 없이 자료실 밖으로 반출시키려한 사람 3. 도서를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 4. 최종 자료 대출일부터 2년 이상 대출이 없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회원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② 회원 자격이 상실된 사람 중에서 군수가 도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③ 회원자격 상실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는 조례 제16조에 따른 거창군도서관운영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2(자료대출)**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대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군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군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이면서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3.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4. 책이음회원(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어디서든 대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1. 희귀 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논문집 3. 각종 신문자료 4.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5. 그 밖에 군수가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6조(대출) ① 자료의 대출은 무료로 하고, 대출기한은 14일 이내로 하되, 1회에 대출하는 자료는 5권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한 자료가 여러 권으로 분철된 것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대출기간 연기신청은 1회에 한하며 연기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제6조(대출)** ① 자료의 대출은 무료로 하고, 대출기한은 14일 이내로 하되, 1회에 대출하는 자료는 5권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대출기간 연기신청은 1회에 한정하며 연기신청일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제7조(자료의 반납)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도서관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자에게 이를 반납토록 할 수 있다. ② 대출 자료의 반납기일이 도서관 휴관일인 때에는 다음 개관일로 한다. ③ 대출자가 대출기간을 경과하여 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대출자료 반납요청서〔별지 제3호서식〕발송과 함께 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반납)**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도서관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자에게 이를 반납토록 할 수 있다. ② 대출 자료의 반납기일이 도서관 휴관일인 경우에는 다음 개관일로 한다. ③ 대출자가 대출기간을 경과하여 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대출자료 반납요청서(별지 제3호서식)발송과 함께 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변상) ① 조례 제7조의	**제8조(자료의 변상)** ①조례 제7조에

규정에 의한 자료의 변상은 1개월 이내에 동일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료의 변상을 받을 경우 변상 도서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따른 자료의 변상은 1개월 이내에 같은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같은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료의 변상을 받을 경우 변상 도서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제제) ① 자료를 분실한 사람이 기일 내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상할 때까지 도서관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② 대출 자료의 반납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경과일수에 상응하는 기간동안 대출을 정지한다. ③ 회원증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면, 군수는 회원증 재발급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기재하고 7일 이후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9조(제제)** ① 자료를 분실한 사람이 기일 내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상할 때까지 도서관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② 대출 자료의 반납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경과일수에 상응하는 기간동안 대출을 정지한다. ③ 회원증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면, 군수는 회원증 재발급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기재하고 7일 이후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10조(도서 및 자료의 기증)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도서관에 도서 및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 및 자료기증서〔별지 제6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증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증도서 및 자료부〔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증 등의 방법으로 수입된 도서 및 자료는 도서관 도서 및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제10조(도서 및 자료의 기증)**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도서관에 도서 및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 및 자료기증서(별지 제6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증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증도서 및 자료부(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증 등의 방법으로 수입된 도서 및 자료는 도서관 도서 및 자료와 같게 취급한다.
제11조(사용신청) ① 도서관내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개시 5일 전까지, 허가사항을 변경(1회에 한함)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2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부속시설 이용신청)** 다목적실과 시청각실(이하 “부속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개시 5일 전까지, 허가사항을 변경(1회에 한정함)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개시 2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1. 부속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1부.〔별지 제8호서식〕 2. 사용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부속시설 이용(변경)허가 신청서 1부(별지 제8호서식) 2. 이용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제12조(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전액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2. 50퍼센트 감면: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부속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부속시설 이용시간)** 군수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부속시설의 이용을 허가할 경우 이용일과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일: 도서관 개관일 2. 이용시간: 9시부터 22시까지
제13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도서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사용료의 전액 2. 천재지변 등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때: 사용료의 전액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사용료의 전액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사용료를 환불받고자 할 때에는 부속시설사용료 반환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에 부속시설 사용(변경)허가서,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4조(사용자 변상)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은 1개월 이내에 사용자가 그 시설물을 원상회복하거나	<삭 제>

그 손해액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조례 제16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거창군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한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4. 도서관 운영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제19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부속시설 이용(변경)허가 신청서

신청자	성명(단체명)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주소				
행사명			부속시설	시청각실, 다목적실	
이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회 시간)				
이용목적			행사참가예정인원		
~~사 용 료~~			~~그 밖에(냉난방사용료 등)~~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항 (변경시기재)	행 사 명		
	이용기간(참가인원)		
	이용목적		
변경사유			

「거창군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붙임 1. 이용계획서 1부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거 창 군 수 귀하

부속시설 이용(변경)허가서

「거창군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부속시설물 이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합니다.

신청인	이용기간	부속시설	~~사용료~~	그 밖의 사항
	· · ·부터 · · ·까지	시청각실 다목적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인)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22-76

제출일자	2022. 11. 23.
제 출 자	인구교육과장

1. 제안이유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에 따라 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는 등 규칙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함(안 제1조의2·제5조의2·제12조)

1) 도서관 운영시간, 자료대출, 부속시설 이용시간

나. 용어순화 등 정비함(안 제2조·제3조, 제5조~제10조, 제16조)

다. 사용료 감면·반환 삭제(안 제12조·제13조, 별지 제9호서식·제10호서식)

라. 위원회 규정 정비함(안 제15조·제19조)

1) 삭제: 위원의 임기 및 해촉 ⇒ 조례로 이동 규정

2) 신설: 운영세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9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11. 4.~11. 23.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2년 12월 28일

거창군 규칙 제1358호

거창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항”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3항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4급 이상의 직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거창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2조(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거창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 부서장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군 노인·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생 략)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 부서장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4급** 이상의 직원 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군 노인·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현행과 같음)

거창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22-89

제출일자	2022. 12. 13.
제 출 자	행복나눔과장

1. 제안 이유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위촉위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의 자격기준을 확대하여 유연한 위원 구성으로 위원회 설치목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안 제2조)

나. 위촉위원 자격기준 확대(안 제3조)

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 4급 이상의 직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과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12. 1.~12. 13.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2년 12월 28일

거창군 규칙 제1359호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7월·8월”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말한다),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를 “말한다)”로 한다.

제7조의2와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7조의2(예약제외 시설물 운영기준) ① 조례 제3조의3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 보수나 동절기 등으로 인해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힐링랜드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자연휴양림 활성화를 위한

홍보, 관련기관 협조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산림치유센터 내 세미나실(산림치유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별도의 예약 없이 사용함이 원칙)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주중에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③ 예약제외 시설물의 운영은 별지 서식의 시설사용 대장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조의3(예약제외 시설물 사전예약) ① 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예약제외 시설물의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예약통합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이하 “관리자 권한”이라 한다)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 권한으로 예약할 경우 권한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관리자 권한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권한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
3. 자체 관리자 권한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입장시간 등) ① (생략) ② 성수기와 비수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성수기: 7월·8월, 금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전날 2.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제2조(입장시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성수기와 비수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성수기: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 금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전날 2.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제4조(휴관일)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힐링랜드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정기 휴관일: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말한다),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2. 임시 휴관일: 군수가 시설의 점검 및 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생 략)	제4조(휴관일)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힐링랜드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정기 휴관일: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말한다) 2. 임시 휴관일: 군수가 시설의 점검 및 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예약제외 시설물 운영기준) ① 조례 제3조의3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 보수나 동절기 등으로 인해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힐링랜드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자연휴양림 활성화를 위한 홍보, 관련기관 협조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산림치유센터 내 세미나실(산림치유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별도의 예약 없이 사용함이 원칙)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주중에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③ 예약제외 시설물의 운영은 별지 서식의 시설사용 대장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 설>	**제7조의3(예약제외 시설물 사전예약)** ① 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예약제외 시설물의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예약통합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이하 “관리자 권한”이라 한다)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 권한으로 예약할 경우 권한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관리자 권한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권한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 3. 자체 관리자 권한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별지 서식〕 **시설사용 대장**(제7조의2제3항 관련)

연번	사용자	사 유	내 용				비고
			시설명	사용 기간	입실 시간	퇴실 시간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22-81

제출연월일	2022. 11. 23.
제 출 자	산림과장

1. 제안 이유

설·추석 연휴 기간에도 힐링랜드를 운영하고 성수기를 국립자연휴양림 운영기준에 맞춰 방문객과 고향방문 출양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예약제외 시설물의 내부기준을 정하여 힐링랜드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수기 변경(안 제2조)

1) 현행: 7월·8월

2) 변경: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

나. 정기 휴관일 축소(안 제4조)

1) 현행: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2) 변경: 매주 월요일

다.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기준 신설(안 제7조의2·제7조의3)

1) 예약제외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2) 관리자 권한 예약 시 내부기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9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11. 3.~11. 23.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폐지 규칙을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2년 12월 28일

거창군 규칙 제1360호

거창군 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폐지규칙

거창군 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폐지규칙

의안 번호	2022-83

제출일자	2022. 11. 21.
제 출 자	환경과장

1. 제안 이유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거창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환경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함에 따라 이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을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거창군 환경기본조례」 제10조

2)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4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10. 27.~11. 1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2년 12월 28일

거창군 훈령 제462호

거창군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거창군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의안 번호	2022-92

제출연월일	2022. 12. 20.
제 출 자	행정과장

1. 제안 이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 및 담당별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사무의 능률적인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함(안 별표)

1) 신설

가) 전략담당관: 전략, 행정의료타운, 치유산업, 농촌일손, 공공시설

나) 담당: 중대재해예방, 산림소득, 동물복지

2) 폐지

가) 미래전략과(미래전략, 기업지원, 승강기산업, 투자유치)

나) 성과관리

다) 항노화

3) 이관

가) 기업승강기, 투자유치: 미래전략과⇒경제기업과

나) 교통: 경제교통과⇒건설교통과

다) 수출유통: 행복농촌과⇒농업기술과

4) 담당 명칭변경

가) 공보 ⇒ 홍보

나) 복구재난 ⇒ 자연재난

다) 도시재생 ⇒ 스마트도시

라) 지역식품 ⇒ 지역먹거리

마) 보건행정 ⇒ 보건정책

5) 통합

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총괄⇒공동체일자리

나) 관광시설⇒관광정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 제116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거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2년 12월 28일

거창군 훈령 제463호

거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거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배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의안 번호	2022-93

제출연월일	2022. 12. 20.
제 출 자	행정과장

1. 제안 이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 관리기관별 직급,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여 사무의 능률적인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안 별표 3): 총정원 변동없음

1) 기획예산담당관: 감1명
2) 전략담당관: 증21명
3) 미래전략과: 감15명
4) 민원소통과: 감2명
5) 재무과: 감1명
6) 문화관광과: 감2명
7) 복지정책과: 감1명
8) 행복나눔과: 감1명
9) 안전총괄과: 증3명
10) 산림과: 감2명
11) 환경과: 감1명
12) 건설교통과: 증6명
13) 도시건축과: 감2명
14) 농업기술센터: 증1명
15) 거창읍: 감1명
16) 면: 감1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 제116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거창군 고시 제 2022 - 147호

주 택 건 설 사 업 계 획 (변 경) 승 인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주택법」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거 창 군 수

1.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변경)

1) 사 업 명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더샵 포르시엘 2차)

2) 사업주체

가. 상 호 : (주) 무궁화신탁

나. 대표자 : 권준명

다.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 P&S 타워)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규모

가.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23-4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 : 23,054㎡

다. 연 면 적 : 75,907.5732㎡

라. 규 모 : 아파트 6동(443세대),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실, 경로당, 경비실, 어린이집, 주민편의시설

마. 형 별 : 84A형(전용면적 84.9694㎡), 84B형(전용면적 84.7560㎡) 84C형(전용면적 84.6131㎡), 109형(전용면적 109.3039㎡)

119형(전용면적 119.4428㎡), 141형(전용면적 141.8036㎡),
158형(전용면적 158.7591㎡)

4) 사업시행기간

- 2022년 5월 ~ 2024년 09월(29개월)(기정)

- 2022년 5월 ~ 2024년 12월(32개월)**(변경)**

거창군 고시 제2022 - 148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2. 28.

거 창 군 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갈지1길 38-3 등 7건
- 건물번호 변경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9길 130
- 건물번호 폐지 :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하궁항길 21-3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고시 제2022-149호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도로명 등의 고시 및 고지)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도로구간 변경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거 창 군 수

1. **고시일자** : 2022. 12. 28.

2. **고시방법** : 거창군보, 거창군 홈페이지,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참조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및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

4. **참고사항**

○ 도로구간의 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일 2022년 12월 28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민원소통과(☎055-940-3314)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구간 변경 조서

일련번호	행정구역	구 분	도로명	도로구간		중앙선	건물번호	사물주소	도로구간 변경 사유	비 고
				시작지점	끝지점					
1	신원면	변경 전	내탐길	신원면 대현리 415-1 (내탐길 104-1)	신원면 대현리 411-1 (내탐길 104-20)	도면참조	1	없음	종속구간 연장	직권
		변경 후	내탐길	신원면 대현리 415-1 (내탐길 104-1)	신원면 대현리 산10 (내탐길 104-168)	도면참조				

주소정보기본도

항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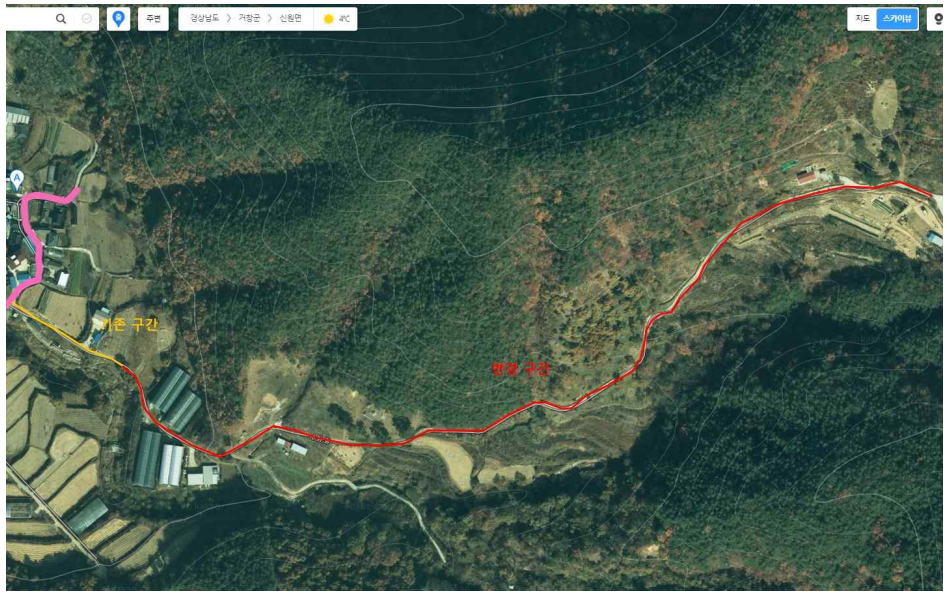

거창군 공고 제2022-1762호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2. 23.

거 창 군 수

□ 교섭요구 노동조합

○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대표자 : 위원장 조용병, 지회장 황인섭)

○ 교섭요구 일자 : 2022. 12. 22.(목)

□ 단체교섭 참여

○ 참여방법 : 단체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단체교섭 요구서 제출 (2022. 12. 30. 18:00한)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22. 12. 23. ~ 2022. 12. 30.

○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 조합원 수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중 택일(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 제 출 처 : 거창군청 행정과 서무담당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참고사항

○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행정과 서무담당(☎055-940-31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에 따른 행정예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2년 12 월 26일

거 창 군 수

1.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취지

○ 가축사육제한구역 변동사항을 지형도면에 반영하여 거창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을 현행화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를 투명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명 칭: 거창군 가축사육제한구역

○ 위 치: 거창군 전역

○ 지정면적: 538.56㎢(기존 533.15㎢ 증 5.40㎢)

3.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1:5,000 지형도(게재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4. 지형도면 열람 및 의견제출

○ 열람기간: 2022. 12. 27. ~ 2023. 1. 15. (20일간)

○ 열람장소: 거창군청 환경과

○ 본 공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거창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에 따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등

○ 제출기관: 거창군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 주 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 연락처: 055-940-3513 (Fax: 055-940-3759)

○ 제출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5. 가축사육 제한구역 공고내역

○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 총괄내역 (㎢)

연번	행정명	변경 전 (2017.12)			변경 후 (2022.12)		
		전체면적	가축사육제한지역		전체면적	가축사육제한지역	
			면적	비율		면적	비율
1	거창읍	55,745,004	48,858,137	87.6%	55,427,042	48,862,928	88.2%
2	주상면	50,022,797	36,628,490	73.2%	49,828,478	36,815,187	73.9%
3	웅양면	58,507,448	42,960,382	73.4%	58,418,248	43,262,576	74.1%
4	고제면	58,423,231	38,261,823	65.5%	58,461,295	38,449,769	65.8%
5	북상면	125,249,445	80,137,416	64.0%	123,284,964	79,533,910	64.5%
6	위천면	53,868,911	28,131,310	52.2%	53,813,531	28,275,949	52.5%
7	마리면	46,593,983	33,834,999	72.6%	46,262,041	34,438,192	74.4%
8	남상면	68,493,035	47,811,395	69.8%	68,084,735	48,502,349	71.2%
9	남하면	49,798,017	30,752,186	61.8%	49,537,657	30,862,071	62.3%
10	신원면	72,737,785	48,357,341	66.5%	73,753,854	49,238,693	66.8%
11	가조면	66,073,737	39,058,244	59.1%	65,920,414	40,219,671	61.0%
12	가북면	96,221,263	58,365,710	60.7%	96,114,258	60,101,019	62.5%
합계		801,734,656	533,157,434	66.5%	798,906,517	538,562,315	67.4%

○ 가축사육 제한구역 세부내역 (㎡)

행정명	변경	행정 면적	전부 제한 구역	일부 제한 구역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주거밀집지역에서 200m이내	주거밀집지역에서 300m이내	주거밀집지역에서 800m이내	
거창읍	기정	55,745,004	11,920,873	21,770,432	28,523,021	47,746,234	48,858,137
	변경	55,427,042	11,858,539	23,164,182	30,260,193	48,019,688	48,862,928
	증감	-317,962	-62,334	1,393,750	1,737,172	273,454	4,791
주상면	기정	50,022,797	-	8,533,828	13,433,120	36,628,490	36,628,490
	변경	49,828,478	-	8,512,213	13,273,298	36,815,187	36,815,187
	증감	-194,319	-	-21,615	-159,822	186,697	186,697
웅양면	기정	58,507,448	410,199	11,178,843	17,527,941	42,960,382	42,960,382
	변경	58,418,248	342,121	11,504,078	17,959,939	43,262,576	43,262,576
	증감	-89,200	-68,078	325,235	431,998	302,194	302,194
고제면	기정	58,423,231	-	8,358,048	13,474,343	38,261,823	38,261,823
	변경	58,461,295	-	8,381,345	13,525,749	38,449,769	38,449,769
	증감	38,064	-	23,297	51,406	187,946	187,946
북상면	기정	125,249,445	36,836,974	8,934,981	14,193,661	44,272,521	80,137,416
	변경	123,284,964	35,783,943	9,220,639	14,595,154	45,368,577	79,533,910
	증감	-1,964,481	-1,053,031	285,658	401,493	1,096,056	-603,506
위천면	기정	53,868,911	-	8,277,509	12,342,115	28,131,310	28,131,310
	변경	53,813,531	-	8,438,700	12,574,079	28,275,949	28,275,949
	증감	-55,380	-	161,191	231,964	144,639	144,639
마리면	기정	46,593,983	1,279,949	9,291,677	14,531,759	32,953,665	33,834,999
	변경	46,262,041	1,261,435	9,711,631	15,000,944	33,626,929	34,438,192
	증감	-331,942	-18,514	419,954	469,185	673,264	603,193
남상면	기정	68,493,035	779,466	11,732,870	19,029,177	47,811,395	47,811,395
	변경	68,084,735	780,015	12,280,552	19,666,483	48,502,349	48,502,349
	증감	-408,300	549	547,682	637,306	690,954	690,954
남하면	기정	49,798,017	9,853	5,985,825	9,575,517	30,743,727	30,752,186
	변경	49,537,657	9,771	6,238,242	9,831,323	30,853,688	30,862,071
	증감	-260,360	-83	252,417	255,806	109,961	109,885
신원면	기정	72,737,785	-	10,211,658	16,698,083	48,357,341	48,357,341
	변경	73,753,854	-	10,918,278	17,469,964	49,238,693	49,238,693
	증감	1,016,069	-	706,620	771,881	881,352	881,352
가조면	기정	66,073,737	2,655,748	13,558,816	19,649,874	38,866,445	39,058,244
	변경	65,920,414	2,636,934	13,949,626	20,248,404	40,030,623	40,219,671
	증감	-153,323	-18,814	390,810	598,530	1,164,178	1,161,427
가북면	기정	96,221,263	2,185,197	10,553,220	17,467,302	56,728,657	58,365,710
	변경	96,114,258	2,182,716	11,455,972	18,937,396	58,525,997	60,101,019
	증감	-107,005	-2,481	902,752	1,470,094	1,797,340	1,735,309
합계	기정	801,734,656	56,078,259	128,387,707	196,445,914	493,461,990	533,157,434
	변경	798,906,517	54,855,474	133,775,458	203,342,925	500,970,025	538,562,315
	증감	-2,828,139	-1,222,785	5,387,751	6,897,011	7,508,035	5,404,881

붙임 1. 총괄도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총 괄 도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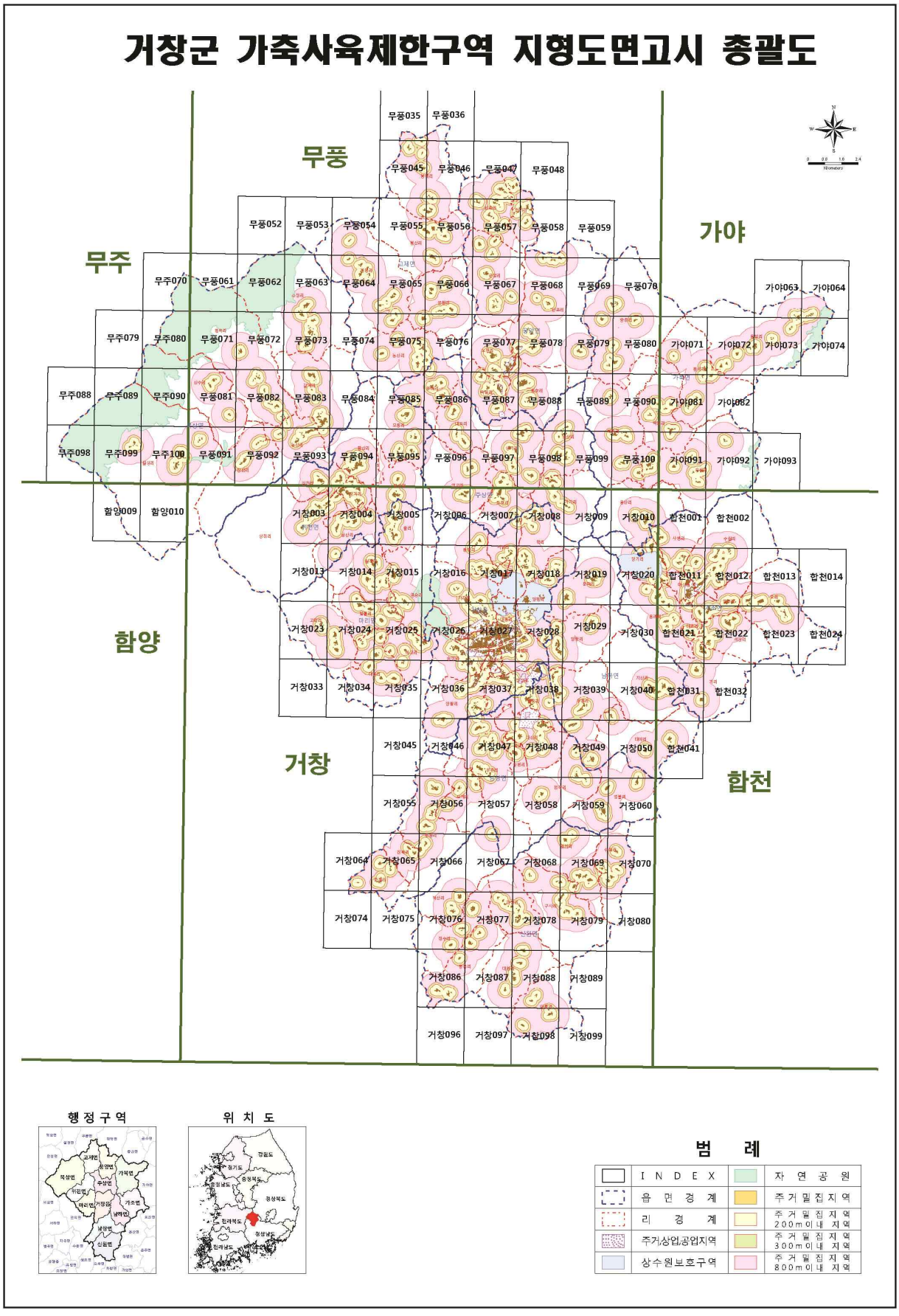
거창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고시 총괄도
무풍
무주
가야
함양
거창
합천
무풍035 무풍036
무풍045 무풍046 무풍047 무풍048
무풍052 무풍053 무풍054 무풍055 무풍056 무풍057 무풍058 무풍059
무주070 무풍061 무풍062 무풍063 무풍064 무풍065 무풍066 무풍067 무풍068 무풍069 무풍070
가야063 가야064
무주079 무주080 무풍071 무풍072 무풍073 무풍074 무풍075 무풍076 무풍077 무풍078 무풍079 무풍080 가야071 가야072 가야073 가야074
무주088 무주089 무주090 무풍081 무풍082 무풍083 무풍084 무풍085 무풍086 무풍087 무풍088 무풍089 무풍090 가야081 가야082
무주098 무주099 무주100 무풍091 무풍092 무풍093 무풍094 무풍095 무풍096 무풍097 무풍098 무풍099 무풍100 가야091 가야092 가야093
함양009 함양010
거창003 거창004 거창005 거창006 거창007 거창008 거창009 거창010 합천001 합천002
거창013 거창014 거창015 거창016 거창017 거창018 거창019 거창020 합천011 합천012 합천013 합천014
거창023 거창024 거창025 거창026 거창027 거창028 거창029 거창030 합천021 합천022 합천023 합천024
거창033 거창034 거창035 거창036 거창037 거창038 거창039 거창040 합천031 합천032
거창045 거창046 거창047 거창048 거창049 거창050 합천041
거창055 거창056 거창057 거창058 거창059 거창060
거창064 거창065 거창066 거창067 거창068 거창069 거창070
거창074 거창075 거창076 거창077 거창078 거창079 거창080
거창086 거창087 거창088 거창089
거창096 거창097 거창098 거창099
행정구역
위치도
범례
INDEX
읍면경계
리경계
주거상업공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자연공원
주거밀집지역
주거밀집지역 200m이내지역
주거밀집지역 300m이내지역
주거밀집지역 800m이내지역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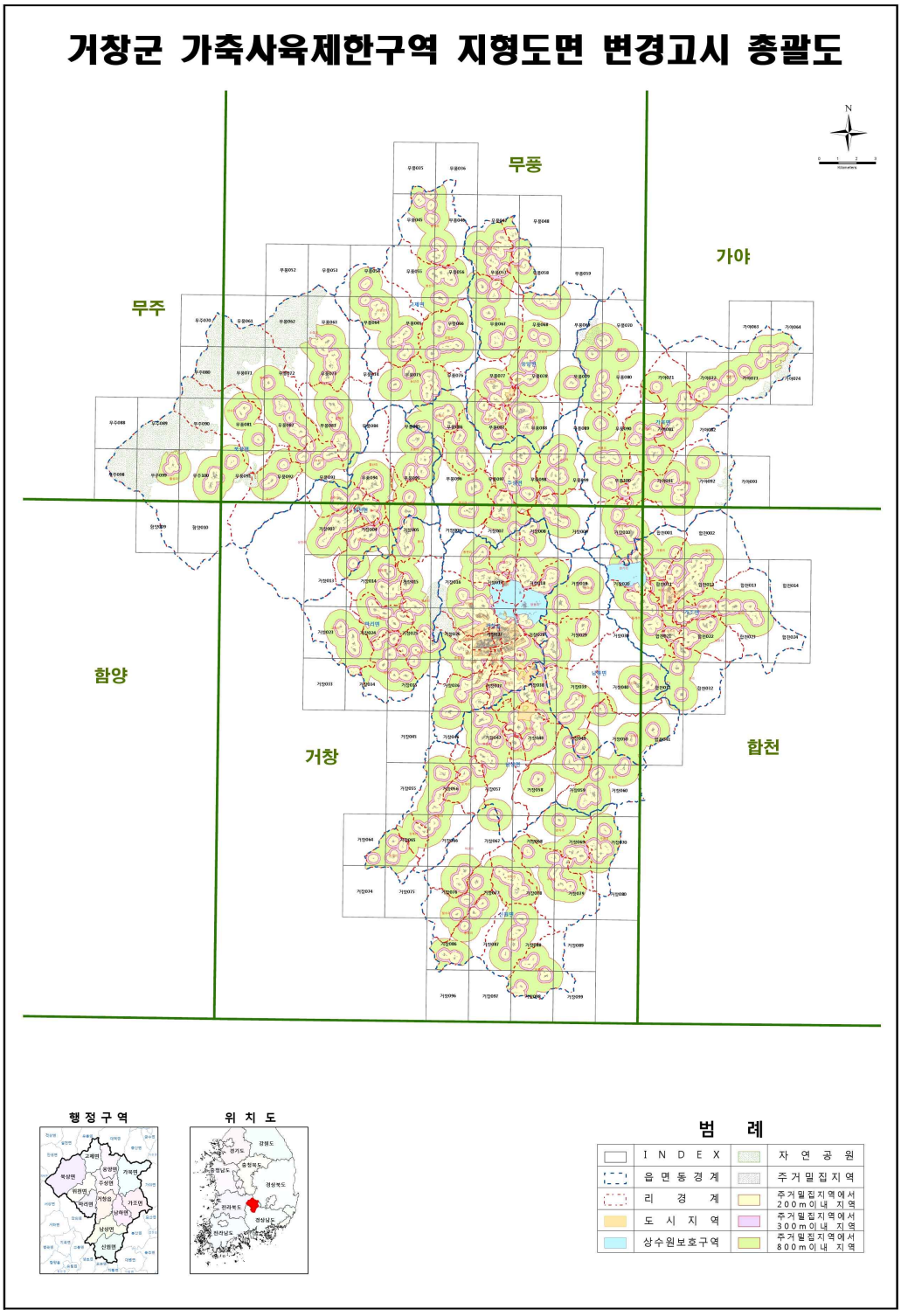
거창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총괄도
무풍
가야
무주
함양
거창
합천
N
행 정 구 역
위 치 도
범 례
I N D E X
읍 면 동 경 계
리 경 계
도 시 지 역
상수원보호구역
자 연 공 원
주 거 밀 집 지 역
주거밀집지역에서 200m이내 지역
주거밀집지역에서 300m이내 지역
주거밀집지역에서 800m이내 지역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거창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공고 제2022 - 1775호

거창군계획시설(시설: 주차장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경상남도 고시 제2021-524(2021.10.14.)호로 최초 결정된 거창군계획시설(시설: 주차장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신청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 12. 28.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1488-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주차장시설: 환승형 공영차고지)

○ 명 칭 : 북상면 환승형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종 류	위 치	사업규모(㎡)		최 초 결정일	비고
		결정면적	금회시행 면적		
주차장시설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1488-2일원	2,673	2,673	경고 제2021-524호 (2021.10.14.)	

○ 건축공사(추가) : 화장실 1동, 휴게실 1동

구 분		층 별	용 도	면 적(㎡)
부 지 면 적				2,184㎡
바 닥 면 적	주1	1층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화장실)	25.564㎡
	주2	1층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운전자휴게실)	15.00㎡
	합 계			40.564㎡
건 축 면 적		바닥면적 합계와 동일		40.564㎡
연 면 적		바닥면적 합계와 동일		40.564㎡
건 폐 율		40.564/ 1,886.00 X 100 %		2.15%
용 적 율		40.564/ 1,886.00 X 100 %		2.15%

4. 사업 시행자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성 명 : 거창군수(경제교통과장)

5. 사업기간 : 당초 2022. 8. 3 ~ 2022. 12. 31.

변경 2022. 8. 3 ~ 2023. 06. 30.

6.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7. 열람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

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참조

9. 의견제출 및 열람 :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서류는 위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서식)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북상면			4,650	2,673					
1	갈계리	1488 -1	답	141	141		거창군			국
2	"	1488 -2	답	1,263	1,263		거창군			국
3	"	1488 -14	답	27	27		거창군			국
4	"	1488 -18	답	615	615		거창군			국
5	"	1488 -17	답	51	51		거창군			국
6	"	1488 -16	답	114	23		거창군			국
7	"	1488 -15	답	97	97		거창군			국
8	"	1484	구	1,743	144		국(농수산부)			국
9	"	1488 -12	도	239	239		경상남도			국
10	"	1433 -2	도	165	2		국(건설부)			국
11	"	1488 -13	도	13	13		경상남도			국
12	"	1488 -8	도	182	58		경상남도			국